

正祖 紿音의 印出과 對民 보급

권 기석 *

- 1. 머리말
- 2. 18세기 中央-外方의 官版 인출 협력체계
- 3. 紿音의 간행과 전국적 보급
 - 1) 운음의 작성 의도와 諺解
 - 2) 외방 관아를 활용한 대량 인출과 배포
- 4. 맺음말

1. 머리말

18세기에 재위한 英祖와 正祖는 학자 군주로서 많은 저술을 직접 짓거나 신하들에게 찬술을 명했다. 기존 연구에서도 밝혀져 있듯이 영조대에는 다수의 御製書를 편찬했고, 정조대에는 御定書, 命撰書를 편찬하는 한편으로 국왕이 신료와 백성들에게 알리는 글인 ‘綴音’을 독립된 저술로서 떠내는 일이 찾아졌다.¹⁾ 이러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1) 綴音은 본래 『禮記』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英祖 초반까지도 왕의 글을 이르는 별칭에 불과 했으나, 영조 중반 이후 ‘특별 담화’와 같은 성격을 띤 독자적인 문서 형식으로 확립되었고 (金伯哲, 2014 「(6장) 윤음과 왕정 전통」 『두 얼굴의 영조: 18세기 탕평군주상의 재검토』, 태학사; 김백철, 2011 「英祖의 綴音과 王政傳統 만들기」 『藏書閣』 26), 정조대에도 윤음으로 국왕의 뜻을 알리는 전통이 계승되었다. 그 밖에 윤음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 이 있다. 朴正圭, 1993 「朝鮮時代 教書 綴音에 관한 研究」 『한국언론학회 연구보고서 및 기타간행물』, 한국언론학회; 백두현, 2009 「훈민정음을 활용한 조선시대의 인민 통치」 『진 단학보』 108; 김문식, 2011 「정조의 생각: 조선 최고의 개혁 군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글향아리.

한 책은 좁개는 왕실이나 신료에서부터 넓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해 印出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8세기 국왕들은 자신의 저술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당시의 국가적 간행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중앙 정부의 校書館 등 출판간행을 담당한 관서는 물론이고, 지방 감영과 군현의 관아의 인력과 물력이 폭넓게 동원되었다. 특히 정조의 윤음은 한글로 번역하여 지방의 일반 백성에게 널리 전파하려 하려 했었던 데서 드러나듯, 목판과 활자 등을 활용한 인쇄술과 이를 활용하여 다수의 서책을 인출·보급할 수 있었던 중앙 관서와 지방 관아의 능력은 국왕과 민인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렇게 정조대에 들어와 국가적 간행 역량을 바탕으로 국왕의 저술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서적 보급의 층위라는 면에서도 왕실이나 조정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전 시기부터 그 경험과 조건이 충족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지방관아를 활용한 목판본 보급이 編音 등의 간행을 통해 국왕과 지방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음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²⁾ 선대왕부터 이어져온 학자군주의 전통과 저술 활동, 小民 보호를 위해 上言·擊錚을 활성화하며 백성과의 직접 소통을 내세운 새로운 君主像³⁾ 등은 향촌의 民人까지 대상으로 하는 저술을 기획하게 된 중요한 동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독자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중앙과 외방의 간행 협력 체계였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국가 관청의 인쇄 역량이 윤음의 효과적 전파에 널리 활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18세기 탕평정 치 시기 ‘君師’를 표방한 국왕 주도의 정치 문화가 시대적 배경이었다는 점 등은 이미 잘 밝혀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왕이 간행과 보급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영 인쇄술의 정치·사회적 파급 효과가 어떻게

2) 남권희, 2013 「목판과 활자 인쇄를 통해 본 전통시대 지식과 정보의 소통」『사회과학 딤론과 정책』 6, 18-20면; 남권희, 2014 「(여는 글) 목판과 지식문화」『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38-41면.

3) 한상권, 1997 「민소(民訴)의 활성화와 민본정치」『역사비평』 37; 이태진, 2012 「제7부 조선후기: 절대군주정의 소민 보호 정치」『새한국사: 선사시대에서 조선 후기까지』, 까치글방; 김문식, 2014 「18세기 국왕의 소통 방식」『韓國實學研究』 28.

증대될 수 있었는지 등의 문제에 관한 구체적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정조의 윤음이 다수의 독자에게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이를 위해 당시의 관판 인쇄술과 서적 보급 체계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2장에서 우선 이 시기 중앙과 외방 사이에 관영 인쇄 작업과 정에서 구축되어 있었던 협력 체계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중앙과 외방이 협력하는 가운데 활자와 목판이라는 인쇄 방식을 상황에 따라 어떻게 안배했으며, 인력이나 물력의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3장에서는 정조 윤음의 간행·배포 과정에서 중앙과 외방의 협력체계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정조의 윤음은 국왕이 다수의 臣民에게 전파하고자 하였기에, 비교적 대량으로 인출하여 배포할 필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기록이었다. 정조가 윤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을 통해서, 국가적 인쇄 역량을 바탕으로 지식 전달과 정보 소통의 대상이 확대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 정치참여층인 관료나 사족뿐만 아니라 하층민에게까지 정치적 동의와 공감을 구하는 새로운 王政의 면모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필자의 작업은 서적의 간행과 배포라는 서지학적 측면의 주제가 18세기 정치문화와 사회변동의 큰 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조망하는 시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의 구체적 검토를 위해서 정조 재위기 뿐만 아니라 조선시기 윤음의 전반적인 현황을 〈부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부표〉에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및 장서각 등 주요 소장 기관의 현존 판본 현황을 반영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내외 기관 소장본의 판본 정보도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했다. 서지정보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간행에 관한 전후사정은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실려 있는 조정의 논의와 국왕의 처분을 활용하였다.

2. 18세기 中央-外方의 官版 인출 협력체계

18세기 서적 간행과 보급은 교서관 등 중앙의 관서와 각도 감영을 비롯하여 인쇄 역량을 갖춘 여러 군현의 협력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규장각, 교서관, 춘방 등의 중앙관서와 경상감영, 영변부, 평안감영 등에서 새긴 목판이 소장되어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四書三經 大全 및 謢解를 갖추어 놓은 데에서 드러나듯⁴⁾ 중앙과 외방 사이에는 일정한 협력 체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조선전기부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세기인 세종 대에 각도의 고을에 보관된 책판은 신구 수령이 교대할 때 ‘解由’에 무슨 책판이 몇 쪽임을 명백하게 기록하여 인계하고, 재임 중 파손되거나 유실된 쪽 수를 보충하여 인계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⁵⁾ 같은 시기 중앙정부에서는 필요한 책판을 외방의 군현에서 공급받기도 했고,⁶⁾ 16세기 선조대에는 중앙의 교서관 관원이 책판이 있는 고을로 종이 등 물자를 집결시켜 인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⁷⁾ 이처럼 중앙정부는 외방의 관원에게 지방 책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기면서, 중앙의 필요에 따라 인력과 물자를 활용하여 간행 작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와 같은 중앙-외방 간행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미 16세기의 『攷事撮要』에 책판 목록이 수록되었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전기부터 지방 각지에 소재한 책판 목록이 작성되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⁸⁾ 전국 책

4) 權奇奭, 201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册板의 현황과 특징」 『규장각』 50, 408-411면.

5) 『世宗實錄』 7년(1425) 9월 1일 丁酉 “吏曹啓 請各道各官所在冊板 守令於新舊交代解由開寫某冊幾板 明白傳掌 其等內破毀遺失板子 依數充補傳掌 以爲恒式”

6) 『世宗實錄』 11년(1429) 2월 23일 己亥 “慶尙道監司 進新刊易書春秋板子 命下鑄字所”; 조선초기부터 교서관은 전국의 판본 소장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음이 밝혀져 있다(金聖洙, 2009 「조선시대 국가 중앙인쇄기관의 조직·기능 및 업무 활동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42, 180-183면).

7) 『宣祖實錄』 6년(1573) 8월 16일 癸亥 “發明綱目之印出 (중략) 莫若令下三道紙 以正月會納于冊板近處 大邑以正月念後 遣校書館官員 印出爲當”

8) 『고사촬요』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 참고. 裴賢淑, 2003 「宣祖初 地方 册板考」 『서지학연구』 25:

판의 종류 및 수량, 마모 상태 등을 정리하여 그 활용 가능 여부를 밝히는 것은 서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18세기 후반인 1796년(정조 20) 정조의 명으로 서유구 등이 편찬한 전국 책판 해제 목록인 『鏤板考』는 전국적인 책판 관리를 위한 노력의 대표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⁹⁾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누판고』 이외에도 『諸道冊板錄』(18세기 후반), 『各道冊板目錄』(1840), 『完營冊板』(1759) 등의 책판 목록이 소장되어 있어서 18~19세기에 책판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는 중앙의 교서관과 외방의 관아 사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본고의 주제인 윤음의 간행과 보급을 매개로 하여 국왕과 백성,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시도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책판목록의 편찬도 18세기에 한층 긴밀해진 중앙-외방의 협력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이다. 실제로 이 시기 중앙이 지방의 목판 관리에 관여한 사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1744년(영조 20) 당시 『性理大全』의 목판이 희귀했는데, 順天府에 판본이 있었으나, ‘刑缺 하여 간인할 수 없다고 하니 完營에 신칙하여 改新하도록 하였다.¹¹⁾ 1741년(영조 17)에는 『五禮儀』의 판본이 星州에 있으나 이미 심하게 뒷이 닳아 인출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嶺營에 판각하여 인출하도록 한 예가 있다.¹²⁾

金致雨, 1972 「敎事撮要의 版種考」 『한국비블리아학회지』; 김치우, 1974 「典籍의 刊行 頻度로 본 王亂以前 地方文化事情의 分析的 考察: 特히 敎事撮要 冊板目錄을 中心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9) 『누판고』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 참조. 옥영정, 2006 「누판고」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5』, 휴머니스트: 성봉현, 2014 「『누판고』란 무엇인가」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글항아리: 리상용, 2005 「『鏤板考』 수록 도서의 질적 수준에 관한 연구」 『서지학 연구』 31; 리상용, 2012 「『누판고』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3.

10) 남권희, 2014 앞의 논문.

11) 『承政院日記』 영조 20년(1744) 3월 5일 계미 “禱曰 性理大全 爲聖學之根本 而此冊板本 稀貴 臣待罪完營時 聞順天府有板本 而頗缺不可刊印云 故臣欲革新 而徑遞不果矣 上曰 然則 申飭完營 使之革新 可也”

12) 『承政院日記』 영조 17년(1741) 5월 1일 甲子 “(閔)應洙曰 五禮儀板本 獨在於星州 而今已刂甚不可印 印本亦絕稀 宜令改刊矣 上曰 此板本 比他冊板 豈不甚重乎 前大提學李德壽

책판목록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한 협력체계는, 지방 책판의 활용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앙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외방의 인쇄 역량을 활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중앙의 지식이나 정보를 지방에 보급하기 위하여 외방에 인쇄를 맡긴 경우이다.

먼저 중앙의 필요에 따라 외방을 활용한 첫째의 경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필요로 하는 도서의 책판을 보유하지 못하였을 경우, 외방의 여러 도에서 보유한 목판을 인출하여 옮겨 보내도록 하였다.¹³⁾ 이러한 책의 상당수는 관청의 업무용 도서였는데, 『大明律』이나¹⁴⁾ 『五禮儀』가¹⁵⁾ 그러한 책이었고, 이들을 인출하여 刑曹 등 각司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낙질되거나 훼손된 책자를 보충할 때도 지방의 목판을 활용했다.¹⁶⁾ 지방에 善本의 목판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1749년(영조 25)에는 교서관과 춘방의 『綱目』이 합쳐야 완질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完營(전라감영)의 목판이 정밀하므로 이를 인출하여 교서관에 두자는 제안에 영조가 동의한 사례가 있다.¹⁷⁾ 이렇게 전국의 목판을 중앙에서 파악하면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판이 외방에 있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인출하도

修補後 分付嶺營 使之刻板印出 可也”

- 13) 『承政院日記』 정조 5년(1781) 6월 13일 甲申 “上曰 芸閣無五禮儀續五禮儀經國大典續大典板 故不得印出云 外方諸道有板處 印出四五件上送之意 行關知委 可也”
- 14) 『承政院日記』 영조 35년(1759) 8월 19일 丙申 “(刑曹判書 金尙翼曰) 本曹照律之際 不可無大明律 而見存冊子刊缺 殆不能考閱 分付冊板所在邑 精印一本 以爲上送行用之地 何如”
- 15) 『承政院日記』 정조 5년(1781) 윤5월 5일 丁未 “(徐有防曰) 政院初無五禮儀刊置之事 亦甚欠典矣 上曰 印板在於嶺營乎 有防曰 然矣 上謂志儉曰 分付內閣 限十件印出 分置各司 可也”
- 16) 『承政院日記』 정조 19년(1795) 10월 15일 壬辰 “時秀曰 勅行出來後 例以醫鑑經書 待令于上副使館所 (중략) 故日前點檢 太半蠹蝕漏壞 臣意則以爲 及今更考其中傷損漏落處 令有板處即爲印出 以爲備待之地 好矣 上曰 依此爲之”; 『承政院日記』 영조 30년(1754) 9월 10일 丙戌 “梓曰 本館[弘文館: 인용자 註] 書籍落卷填補事 (중략) 落卷板本之在外方者 則已發關各邑 使之印送矣”
- 17) 『承政院日記』 영조 25년(1749) 1월 17일 丙寅 “奎采曰 本館綱目 卷卷闕失 與春坊綱目 合成完秩 雖是曾已進講之冊子 而事體苟艱 且或有不時取入之命 則徒合冊子 不可持入 而聞完營板本甚精云 令完營 印出一秩 以儲本館 何如 上曰 依爲之”

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교서관에서 목판 또는 활자로 인출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화되었다.¹⁸⁾

중앙에서 외방의 목판을 활용하여 서책을 구하고자 할 때, 외방과 중앙은 작업 내용에 따라 역할을 나누기도 하였다. 원고 작성이나 교정 같이 책의 내용을 정서하는 작업은 중앙에서 하고, 외방 관아에서는 이를 내려 받아 판각 및 인출하는 방식이 흔히 나타났다. 예컨대 1761년(영조 37) 『御評兩漢辭命』을 편찬하면서 경상감영의 儲積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간행을 맡겼는데, 畫字官이 쓴 것을 下送하여 刊出하도록 하였다.¹⁹⁾

유사한 예는 더 확인된다. 1745년(영조 21) 『老乞大諺解』를 司譯院에서 개간하였는데, 호조에서 物力を 내어주고 사역원의 관원이 작업을 관장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 책을 정서하여 호남감영에 내려 보내 개간 및 인출하고 上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²⁰⁾ 같은 해 11월에는 『漢語老乞大諺解』를 교정한 것을 평안감영에 下送하여 開刊·印出하도록 조치하였다.²¹⁾ 1747년(영조 23)에는 『歷代通鑑節要』도 畫字官을 시켜 정서한 것을 嶺營에 내려보내 인출하였다.²²⁾

이러한 방식의 분업은 교정·정서와 같이 중앙관청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과

18) 영조대 『퇴계집』을 교서관에서 간행하려 하다가 영남 목판의 상태가 좋다는 정보에 따라 경상도에 인출하도록 하고 교서관의 刊役은 잠시 정지한 사례도 있다[『承政院日記』 영조 8년(1732) 2월 19일 丁未 “宗城曰 芸閣 方刊退溪集 而一書之刊 糜費不少 本集卷秩浩穰 亦有時詛舉贏之慮 今聞嶺南本 猶完好云 使本道印上 芸閣刊役 則今姑停止 何如 上曰 依爲之”].

19) 『承政院日記』 영조 37년(1761) 8월 9일 乙亥 “上命(徐)命膺讀兩漢辭命 (중략) 命膺曰 臣聞嶺伯 多有儲積云 下送嶺營 使之刊出 事甚便好矣 (중략) 上曰 御評兩漢辭命 為先書進一件 一件精書 下送嶺營十三件印上”

20) 『承政院日記』 영조 21년(1745) 6월 3일 甲寅 “在魯曰 (중략) 有老乞大諺解印出之命 而自譯院開刊 則地部之上下物力 院官之句管刊役 誠有弊端 正書一本 下送湖南監營 使之開刊印出 上送 何如” 논의 결과 ‘譯舌이 통하는 땅’인 평안도에서 간행하는 것을 결정되었다.

21) 『承政院日記』 54책, 영조 21년(1745) 11월 6일 癸酉 “趙明履 以司譯院官員 以都提調提調意言啓曰 漢語老乞大諺解校正字音 下送于平安監營 開刊印出冊子十五件 竝板本 繼已上來矣”

22) 『承政院日記』 55책, 영조 23년(1747) 8월 9일 丁卯 “林象元啓曰 歷代通鑑纂要 送于嶺營刊行事 命下 而本冊乃是粉唐紙所印者 而只有一件 今雖下送 自嶺營當贍書入梓 而本冊往來 亦有弊 使畫字官 精書下送 以爲印出之地 似好矣 上曰 依爲之”

간행·인출과 같이 지방 관아의 물력 및 인력이 동원될 수 있는 작업이 구별되기 때문에 필요했다. 1753년(영조 29)에 湖南監營에는 『東醫寶鑑』의 옛 책판이 있었으나 刻缺하여 상태가 좋지 못한 까닭에 印本을 付板하여 改刊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외방의 각수가 이전의 인쇄본을 바탕으로 다시 새길 경우 자획이 비슷한 글자를 혼동하는 오류가 무수히 나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자관이 원고를 쓰고 醫官이 이를 교정하여 내려보내 간행하도록 하였다.²³⁾ 실제 『동의보감』 중에는 완영에서 간행하고, 내의원에서 교정하였다는 간기가 남아 있는 판본이 있다.²⁴⁾

인출은 지방에서 하더라도 그 사후 작업인 粧繢을 중앙에서 맡기도 하였다. 1748년(영조 24) 경상감사 南泰良은 상소에서 감영에서 인출한 『오례의』에 장황을 하지 않은 것은 지방의 匠수가 裁翦을 잘하지 못해 京司에서 장황을 하지 말라고 한 전례에 따른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²⁵⁾ 이처럼 지방 관아는 중앙-외방의 분업 체제에 따라 중앙 정부가 필요로 한 인출 작업 공정의 한 부분을 맡고 있었다.

중앙 정부가 외방 관아에 인출 작업을 분담시킨 까닭은, 지방에서 기존의 책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간행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각수)과 물자(목재, 종이) 등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방에 인출을 맡길 경우 중앙재정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다. 교서관에서 인출을 맡을 경우

23) 『承政院日記』 60책, 영조 29년(1753) 9월 23일 乙亥 “在魯曰 東醫寶鑑 (중략) 板本在於湖南監營 而舊板刻缺 以印本付板改刊 而外方刻手 不解文字 因字畫之近似而誤刊者無數一張之內 誤字不啻十數 亦多有古今所無之字 不可解見 以此送于中國 則必貽中國之譏笑 (중략) 令戶曹進排紙筆墨 分授寫字官寫出 而本院醫官 十分校準下送 使之開刊後 進上院上之件 亦爲參酌印送 何如 上曰 依爲之”

2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奎447 등)에는 ‘歲甲戌仲冬 內醫院校正 完營重刊’이라는 간기가 남아 있다. 이 간기의 갑술년은 통상 1814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1754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이태영, 2018 「완영책판과 전라감영의 인쇄문화」『전라감영 책판의 문화사적 가치와 가능성』, 전북대학교 박물관, 25면), 앞서 제시한 『승정원 일기』 기사의 시점과도 합치된다.

25) 『承政院日記』 영조 24년(1748) 4월 30일 癸未 “慶尙監司南泰良疏曰, (중략) 此際五禮儀之不爲粧繢 又有該司請推之啓矣 (중략) 以外方匠手之不善裁翦 京司每以切勿粧繢爲言 故意謂同此例 而仍前上送矣 忽然請推 未知其故”

戶曹의 물력을 활용해야 했고,²⁶⁾ 각寺에서 부당하는 紙役의 문제도 있었는데,²⁷⁾ 이러한 부담을 지방에 전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자뿐만 아니라 刻手 등의 인력도 중앙의 간행 사업을 위해 외방으로부터 동원되었다. 1782년(정조 6)의 刊役에는 외읍에서 120명이나 되는 각수가 赶役하였고²⁸⁾ 料布도 지급하였다.²⁹⁾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인출의 부담을 떠안은 외방 관아는 과중함을 느끼기도 했다. 경상감사 南泰良의 상소에 따르면, ‘本道는 본래 册板 印上이 많아 거의 虛日이 없고’ 그가 도임한 아래로도 進講 册子를 上送한 것이 8백여 권에 달 하였다고 한다.³⁰⁾ 판각 작업뿐 아니라 印出紙 등 物力を 三南에 卜定한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³¹⁾ 외방 관아는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적의 간행을 책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의 부가적인 요구에도 응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판 인쇄의 특성상 중앙에서 소량의 인출이 필요하더라도 새로운 판각 작업은 인출 수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작업량을 발생시킨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방 관아의 刊役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권질이 많은 책은 부분 별로 나누어 인출을 맡기거나,³²⁾ 판재와 간역은 영남 감영에, 종이는

26) 『承政院日記』 영조 30년(1754) 8월 10일 丁巳 “趙明履曰 (중략) 而板在外方者 指揮各道使之印上 板在芸閣者 指揮戶曹 俾給物力印出”

27) 『承政院日記』 영조 즉위년(1724) 10월 20일 庚寅 “(李)光佐所啓 卽今經費大竭 (중략) 以校書館事言之 進講冊子 雖有舊冊 必令新印 (중략) 戶曹經費 十年内入於印冊者無限 各寺紙役之煩苦 紙價之踊貴 亦多由此”

28)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6월 8일 癸酉 “上曰 刻役今至垂畢 而刻手爲幾名乎? 昌聖 曰 刻手之自外邑入來者 爲一百二十名 今方赴役 來月望間 似可完畢矣”

29) 『承政院日記』 정조 9년(1785) 7월 24일 辛未 “上曰 刻手爲幾人 而印出數 爲幾張乎? 大年 曰 外方刻手則多未上來 而印出數 不過百餘張矣 上曰 工匠料布 爲幾斗乎? 大年曰 二疋布 六斗半而已矣”

30) 『承政院日記』 영조 24년(1748) 4월 30일 癸未 “慶尙監司南泰良疏曰 (중략) 本道素多冊板印上 殆無虛日 自臣到任後 凡進講冊子之上送者 亦幾八百餘卷”

31) 『承政院日記』 영조 13년(1737) 12월 22일 乙巳 “師洙曰 (중략) 今因鄭履儉陳達, 有全帙十一件及資治通鑑五件印出之命 而今年歲入大縮 物力誠爲難支 印出紙三南卜定 雖有弊端似不可已”

32) 영조대에 사서삼경, 『강목』, 『주자대전』 등과 같이 교서관에서 儲置해 둔 서책이 없는 경 우 兩南, 호남과 영남에 나누어 인출해 오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承政院日記』 영조 21

호남·호서 兩道에 부담시킨 것처럼 작업 내용이나 물자를 분담시키기도 하였다.³³⁾ 큰 규모의 간역을 위해 외방에 종이를 分定하여 조달하도록 하면서, 폐단을 줄이도록 어람용 草注紙는 서울에서 충당하고 厚白紙만 兩南에서 찾아 보내도록 조치하기도 했다.³⁴⁾ 인출지의 지방 分定이 결과적으로 民力에 부담을 안겨 주어 많은 폐단을 낳았음을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³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

년(1745) 3월 28일 庚子 “上曰 儒臣所達 雖是芸館 似無儲置書冊矣 益三曰 分付兩南 印來以給好矣 益河曰 四書三經綱目朱子大全等冊 不可不印給矣 上曰 依所達 使兩南分印以給可也”；『皇明通紀』와 『明記編年』 등의 책도 『綱目』의 예와 같이 兩南에 分刊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다[『承政院日記』 영조 1년(1725) 6월 23일 己丑 “上曰 有皇明通記明記編年等冊 而此則依綱目例 編成善矣 鉉輔曰 令兩南分刊 似好矣”]；『警世問答』의 경우 전편은 영남에서 속편은 호남에서 개인하여 간행하도록 하였다[『承政院日記』 영조 50년(1774) 8월 23일 甲辰 “大濟曰 問答只有一件 而活印已久 册板幾弊 合有更刊之道矣 命書傳教曰 噫 警世問答 (중략) 因儒臣所請 前編令嶺南開印刊進 繢編令湖南開印刊進”].

- 33) 『承政院日記』 영조 7년(1731) 1월 10일 甲戌 “宋眞明曰 先正臣朴世采 (중략) 世采文集則令兩南監營刊行 曾有兩次成命 而迄今遷就 慶尙監司趙顯命 慨然於此 方欲獨行刊板之役第當初 既有兩南分刊之命 今自嶺營獨當 宜有更爲稟旨 且其卷帙浩穰 紙地容入甚多 嶺南則板材與刊役 既爲獨當 紙地出處 則湖南湖西 元無異同 令兩道監司 各出紙地 移送嶺南印出 以爲進上及頒布之地 何如 (중략) 上曰 既有成命 何至今不爲舉行耶 依所達 令湖西湖南 並助物力 斯速印出好矣”
- 34) 1738년(영조 14) 진강에 사용할 『자치통감』을 인출하면서 호조에서 종이를 사들이기가 어려워지자, 양남의 감사에게 1천 권에 한하여 分定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 『承政院日記』 영조 14년(1738) 4월 4일 丙戌 “眞明曰 進講冊子資治通鑑印出事 (중략) 曾前芸閣紙貢遺在甚多 每當印冊 以舊遺在劃給 故貢人稱冤 近年印冊頻數 遺在已盡 加用亦多 以地部卽今事力 許多紙地 實難辦貿 限一千卷 分定於兩南監司 何如 上曰 此無弊端乎 眞明曰 頃年以草注紙 分定三南 故芸館下屬 操縱點退 三南至於收錢 民間爲弊不少 而今則御覽正本紙則自京取用於紙貢 只以厚白紙各五百卷 使兩南監司覓送 則似無弊端之可言矣 上曰 依所達施行 可也”
- 35) 『承政院日記』 영조 12년(1736) 4월 25일 己丑 “寅明曰 (중략) 而伏聞召對繼講冊子 大學衍義補名臣言行錄 方令芸閣印出 芸閣自有元貢紙地進排之規 以此只爲進講之件 勿印頒賜等諸件, 似爲省弊之一道 而今以七千餘卷紙 分定三南紙品 則或定以草注 三南各邑 一邑或多至百卷 而皆責之民結云當此民力困窮之時 其何以支堪乎 如公洪道之邑力最殘疲者 初勿舉論 慶尙全光二道 使各其營門 某條辦送 勿爲分徵於民結 而其紙品 亦以大壯紙等 色品稍降 如何”; 『승정원일기』 영조 13년(1737) 10월 17일 辛丑 “寅明曰 芸閣印出之際 所用紙地板材 自戶曹 以貢物推移充給 勿爲卜定於外方之意 分付 何如 上曰 依爲之”; 『승정원일기』 영조 14년(1738) 10월 10일 己丑 “又所啓 自校書館經筵進講資治通鑑五件 有印出之命矣 册紙千卷 分定兩南 而湖南五百卷 雖已上來 嶺南五百卷 未及上來 (중략) 徐宗玉曰,

와 같이 복수의 지방 관아에 작업 내용과 물력·인력 등을 안배하면서 중앙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외방 사이에 통합적인 간행 협력 체계에 힘입은 것이었다.

중앙-외방의 협력체계가 활용된 둘째의 유형으로 협력체계를 통해 중앙의 수요에 부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지식을 보급하거나 정보를 전파하는데에도 큰 기능을 한 경우를 알아보기로 한다. 법전과 같이 지방 행정에 필요한 도서는 중앙뿐만 아니라 외방에서도 필요로 하였기에 각도와 각邑에 배포하였다.³⁶⁾ 『續大典』을 간행하여 배포하는 것은 兩南의 道臣에게 맡기자고 논의하기도 하고,³⁷⁾ 『續兵將圖說』 같은 병서를 關西 감영에서 雕刻하여 여러 邑과 鎮에 분급한 사례도 있다.³⁸⁾ 번각은 기존의 인출본을 바탕으로 지방에서 다시 판각하는 작업으로 중앙의 既刊行本을 지방에 보급할 때 유용한 방식이었다.

이렇게 외방에 배포할 도서의 간행·인출을 각도에 맡기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하는 수단이었다. 1746년(영조 22)에 『無冤錄』을 각도 감영에서 開刊하도록 한 다음에, 각읍에 지시하여 인출해 가도록 하였다.³⁹⁾ 교서관에서 간행하여 각도 각읍에 분급하게 되면 호조의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위해 각도 감영에서 간행과 각읍으로의 배포를 맡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필요로 하는 읍에서 쉽게 인출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었다.

冊紙卜定 實爲巨弊 而今此已卜定之紙 雖不用於今番印役 亦不足爲補民役補經費之資 姑爲藏留 此後如有御覽書冊印出之役 則以此紙用之 爲好矣”

36) 『承政院日記』 영조 39년(1763) 9월 3일 丁巳 “陽澤曰 芸閣校正廳 專管印役 故自前印出可觀書冊頒布京外 而近聞大典·大明律 各邑無印置者 守令凡於考律決訟之際 多有疎謬之弊 此固可悶 自本館知委各道各邑 使之備送物力 兩冊鱗次印布 何如 上曰, 依爲之”

37) 『承政院日記』 영조 20년(1744) 10월 23일 丙寅 “宗玉曰 (중략) 繼大典今當開刊 若使寫字官 依續典字樣而書出 作八卷 命兩南道臣 同爲刊布 似好矣”

38) 『承政院日記』 영조 27년(1751) 8월 3일 丙申 “宗白曰 昨年 因朝令 繼兵將圖說 亦自關西翻刊 監兵營印出 勿論邊地內地 一例分給於列邑鎮”

39) 『承政院日記』 영조 22년(1746) 5월 11일 丙午 “(李)宗城曰 臣待罪校書提調敢達 書冊孰非關緊 而刑獄之緊切 無過於無冤錄 自芸閣刊板 分給於各道各邑 事甚得宜 而此亦有損於經費 下詢戶判而處之 何如 (朴)文秀曰 若自校書館印出 頒布各道各邑 則多費地部物力 莫如使各道監營開刊後 知委各邑 使之印去則好矣 臣待罪北藩時 如是爲之 事甚便當 故仰達矣 上曰 所達好矣 令各道監營開刊 頒布各邑 可也”

외방에서 開刊을 맡으면 보급 대상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단축되는 장점이 있었는데, 인출을 마친 다음에 남는 목판을 각도 감영에 두어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한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756년(영조 32)에 『訓義小學』과 그 謳解를 湖南 監營에서 刊印하도록 하고, '廣印頒布'를 위해 감영에 책판을 두도록 한 사례가 있다.⁴⁰⁾ 지방 유생에게 실시한 과거의 전말과 급제한 글을 모은 책인 『관동빈홍록』 교정본을 該道(강원도)에 내려 인출하게 하면서 목판을 界首邑의 향교에 보관하도록 한 것도 유사한 사례라 할 수 있다.⁴¹⁾

이처럼 서적의 지방 배포에 있어서 감영은 중앙과 예하 군현 및 민인을 잇는 매개이자 거점 역할을 했다. 감영은 간행 작업의 일익을 담당하여 중앙정부의 한정된 인쇄 역량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과 군현을 매개하여 지방사회에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는 기능을 한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18세기 국가 간행 도서의 배포처로 흔히 '八道와 兩都(留守府를 둔 開城과 江華)'가 거론되었다.⁴²⁾ 이들 지역은 중앙으로부터 서적을 배포 받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간행도 가능한 곳이었다.

여러 감영 중에서도 특히 몇몇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우월한 인력과 물자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지목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책판 간행지의 조건으로서 물력과 인력 확보의 용이성, 참여 인력의 작업 공간 확보, 간행 주체와 소통 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이 거론되는데,⁴³⁾ 관권과 지방 재정의 힘을 지닌 감영은 대체로 그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편이었으나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우열이 있었던 것이다.

외방의 핵심적인 간행 거점으로 '兩南'으로 지칭되는 경상감영과 전라감영이

40) 『承政院日記』 영조 32년(1756) 5월 28일 乙未 “傳于鄭玉曰 思政殿訓義綱目板 在岑營 依此例 訓義小學 俱諺解正本一件 下于湖南 令湖營刊印 三件進上 仍爲廣印頒布 板置監營”

41) 『承政院日記』 정조 18년(1794) 6월 20일 乙亥 “傳于李羽晉曰 關東賓興錄校正本 今已啓下 下送該道印出 板本藏于界首邑鄉校 而雪白紙二十件 白紙三十件印進 道內各邑及鄉校各藏一件 而送于內閣安寶 下送然後分藏”

42) 『正祖實錄』 즉위년(1776) 7월 19일 戊子. 이 기사에서 정조는 『貢膳定例』를 인출하여 '八道'와 '兩都'에 반포하였다.

43) 손계영, 2011 「조선후기 책판의 간행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49, 375-385면.

자주 거론되었고, 그밖에 평안감영 등이 포함되기도 하였다.⁴⁴⁾ 일부 감영은 상대적으로 간행 인력과 물자의 확보가 더 잘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다른 감영의 인출 수요까지 감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출 역량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兩南 감영이 다른 도(경기도)에서 필요한 책자까지 인출하여 보낸 사례가 있다.⁴⁵⁾ 일부 감영이 갖춘 인쇄 역량의 우월성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1785년(정조 9)에 『大典通編』을 여러 도에 내려 보내 雕刻하게 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三南(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과 兩西(황해도, 평안도)는 서적 刊役을 많이 경영하여 걱정할 것이 없으나, 關東(강원도)과 北關(함경도)은 간역에 익숙하지 않고 종이를 갖추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⁴⁶⁾ 1798년(정조 22)의 논의에서는 兩南 중에서 湖南의 지질이 가장 좋다고 하였고,⁴⁷⁾ 嶺南에 유명한 각수가 많다는 언급도 있었으며,⁴⁸⁾ 영조대인 1727년(영조 3)에도 『內訓』을 간행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경상도에 工匠이 매우 많으니 경상감사에게 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⁴⁹⁾

寧邊府에서 간행한 四書三經 大典과 謢解의 책판이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44) 조선시대 전라감영은 호남의 요충지이자 인쇄출판의 중심지로서 간행된 서책의 종류가 매우 많았다(옥영정, 2011 「조선시대 完營의 인쇄문화에 대한 고찰」 『서지학연구』 50: 홍성덕 · 김철배, 2005 「전주향교 완영책판(完營冊板) 보존현황 및 활용방안」 『고문화』 65).
- 45) 『承政院日記』 영조 22년(1746) 5월 11일 丙午 “宗城曰 (중략) 書冊孰非關緊 而刑獄之緊切 無過於無冤錄 (중략) 尚魯曰 各道中畿營 疲殘尤甚 雖單卷冊子 似難鳩聚 板子刊印 分送於各邑七道 則自各其監營開刊 而京畿則自芸館刊印以送 似宜矣 宗城曰 芸館何可只爲京畿 開局刊板乎 在魯曰 京畿則磨鍊件數 使兩南分當 印送于畿營 似好矣 上曰 依此爲之”
- 46) 『承政院日記』 정조 9년(1785) 7월 26일 癸酉 “徐鼎修 以大典通編監印廳言啓曰 (중략) 而若論諸道事情 則三南兩西 自前多經書籍刊役 其所奉行 似無可慮 至於關東北關 既不慣於刊役 許多紙地 亦難猝辦 右兩道則依初定奪 用畿邑兩都例 自本廳印頒 恐合事宜 敢啓傳曰 知道”
- 47) 『承政院日記』 정조 22년(1798) 10월 10일 庚子 “泰仁縣監趙恒鎮疏曰 (중략) 我國產紙稱兩南 而嶺南則紙品本自麤劣 湖南則以精好稱 以其精好之必取也”
- 48)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4월 30일 丙申 “命善曰 嶺南刻手 因傳教不得上來 故匠人果難得矣 (鄭)昌聖曰 嶺南刻手最多 而且有名稱矣 上曰 吏判曾經嶺伯 似知之矣 命植曰 果多刻手 而渠輩以此爲生業 故雖使上來 在渠輩 受料得食 必皆樂赴矣”
- 49) 『承政院日記』 영조 3년(1727) 3월 26일 癸丑 “上曰 (중략) 我國有內訓 乃大明太祖高皇后所作也 此亦刊行 與古烈女傳並美 則好矣 予嘗有此意 故言之矣 鎮遠曰 全羅道物力凋殘 慶尙道則工匠頗多 使嶺伯刊行 似好矣 上曰 當下玉堂矣”

에 소장되어 있는 데서도 나타나듯, 감영 소재지가 아닌데도 다수의 책판을 인출한 곳도 있었다. 영변의 경우 인근에 있는 묘향산의 사찰에서 승려들이 紙役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⁵⁰⁾

그런데 지방 감영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쇄수단은 중앙과 차이가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에서는 활자를, 지방에서는 목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앙과 외방이 협력을 할 때에도 두 가지 인쇄수단은 對比를 이루었다. 실제 간행에 관한 국왕과 신료들의 논의를 보면, 지방 관아(대개 兩南의 감영)는 목판 인쇄, 중앙 관청(대개 교서관)은 활자 인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⁵¹⁾ 교서관 같은 중앙 관청에서는 목판과 활자를 병행하기는 하였으나, 활자 인쇄 쪽에 좀 더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1729년(영조 5) 『三綱行實圖』의 印布를 위해서 箕營(평안 감영)의 책판을 활용했는데, 이때 영조는 운각에 없는 목판이 평안감영에 있는 까닭을 물었고, 이에 대한 답변은 ‘芸閣은 의례 鑄字로 인출하므로 원래 목판을 간행해서 두는 일이 없는 까닭’이었다.⁵²⁾ 활자 인출을 병행하는 교서관보다 오히려 외방에 다양한 목판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50) 1783년(정조 7) 비변사에서 올린 「關西御史事目」을 보면, 영변 묘향산의 사찰에서 종이를 만드는 桶을 많이 차려놓은 것 때문에 책의 인출이 많았고, 그 결과 册紙라는 명목으로 監營, 兵營, 本官과 인근 고을에서 侵漁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언급이 나온다[『正祖實錄』 7년(1783) 10월 29일 丁亥].: 1786년(정조 10)에도 묘향산의 승려들의 紙役이 너무 과중하여 流離하고 있으므로, 내각, 외각, 옥당, 춘방을 막론하고 영변에 經書를 印出할 册紙를 부과하는 것을 혁파할 것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承政院日記』 정조 10년 (1786) 4월 20일 癸巳 “香山寺刹 曾無一張紙地捧用之事矣 近來則紙役高重 略干富僧 並皆敗散 各寺諸僧 從此流離 (중략) 仍傳曰 (중략) 此後無論內閣·外閣·玉堂·春坊 寧邊一邑 經書印出冊紙卜定一節 並爲革罷”].

51) 영조 초년 『大學衍義補』의 간행에 관한 논의에서 兩南 방백에게 간행을 명하는 방안과 교서관에서 활자로 인행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承政院日記』 영조 4년(1728) 6월 18일 丁酉 “仁復曰 大學衍義補者 (중략) 而我國無此冊板 實是欠事 若分付於兩南方伯 刊行是書 則物力必不多入 不能則命于芸閣 以活字印行則亦好矣”].

52) 『承政院日記』 영조 5년(1729) 10월 22일 癸亥 “趙顯命曰 三綱行實印布事 命下 而芸閣無板本 聞箕營 有板本矣 使之印出上送 以爲頒布之地 何如 上曰 芸閣則何以無板本 而箕營只有之耶 洪鉉輔曰 臣兄開刊於箕營 仍爲印頒於平安一道矣 淳曰 箕營則自前有之 而芸閣則例以鑄字印冊 元無木板刊置之事 故無之矣 上曰 (중략) 今箕營三綱行實及二倫行實 使之印出上送 可也 顯命曰 然則定其件數 分付耶 上曰 兩冊各百卷印送事 分付 可也”

반면에 외방에서는 활자 인쇄를 활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1727년(영조 3) 실록의 印役을 수행하기 위해 외방의 匠手를 동원했는데, 외방에는 목판을 쓰기 때문에 均字匠이 거의 없어서 경상감영에 있는 한두 명을 부르는 데 그친 일이 있었다.⁵³⁾ 균자장은 활자 조판 작업을 담당한 장인으로 이들이 거의 중앙 관서에만 있었다는 사실은 활자를 활용한 인출이 주로 중앙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 한다. 조선후기 지방 관아에서 활자를 주조하거나, 개인이 활자를 사적으로 주조한 사례는 간혹 있었고,⁵⁴⁾ 특히 목활자는 비용이나 활용도에 있어서 목판이나 금속활자보다 유리한 면이 있어서 조선후기에 지방과 민간에서 풍부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⁵⁾ 하지만 외방 관아가 주된 인쇄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목판이었기 때문에, 외방과 중앙 중 어느 쪽에서 인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곧 목판과 활자 중 어느 수단을 선택할지를 검토하는 문제와 무관할 수 없었다.⁵⁶⁾ 경전이나 역사서 등 進講에 사용하는 책자는 鑄字보다 교서관이나 감영의 책판을 인출하는 것을 선호하였는데,⁵⁷⁾ 이처럼 목판으로 간행되는 도서들은 외

53) 『承政院日記』 영조 3년(1727) 3월 29일 丙辰 “上曰 外方匠手推捉者 幾許云耶 聖輔曰 外方則用木板 故均字匠有處絕無 而慶尙監營 有一二名 故今日又爲別關催促云矣 上曰 (中략) 今聞儒臣所達 事勢誠然 而芸館匠手 今日移去 明日還送 事涉煩屑 嶺營均字匠上來後 芸館匠手 則卽爲還送 使之印出東國通鑑 可也”

54) 정조대에 徐命膺·徐浩修 父子가 왕명을 받아 평안감영에서 각각 丁酉字·再鑄韓構字(壬寅字)를 주조한 바 있으며, 17세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실록 인출을 위해 구입한 민간 활자인 ‘洛東契’도 존재한 바 있다. 또한 17세기의 金錫胄가 韓構字를, 19세기초의 朴宗慶이 全史字를 주조한 예에서 보이듯 권력층 인물이 활자를 私鑄하기도 하였다(千惠鳳, 2012 『한국금속활자인쇄사』, 범우).

55) 玉泳棟, 2002 「地方木活字에 의한 文集의 印出에 관한 一考: 湖南地方을 중심으로」 『書誌學報』 26; 육영정, 2015 「16세기 후반~17세기 조선의 목활자인쇄와 출판문화적 의미」 『한국문화』 72.

56) 『小學訓義』의 간행을 논의하면서, 兩南에 보내어 개간하는 방안과 芸閣에서 인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이에 활자는 즉시 허물기 때문에 오래 행해질 수 없으니 목판이 낫다는 의견이 바로 제시되었다. 『承政院日記』 영조 20년(1744) 6월 26일 壬申 “上曰 (中략) 小學訓義 (중략) 此書若速成 則予於先朝繼述之道 可無憾矣 上曰 此亦當爲開刊之書矣 (徐)宗玉曰 頒布兩南 使之開刊好矣 上曰 芸閣印出 何如 宗玉曰 以活字印出好矣 而蓋活字卽毀 不能久行 不如刊諸木板矣”

57) 영조대 進講에 사용할 『唐鑑』을 인출하기 위해서 鑄字를 사용하기보다는 芸閣 또는 嶺營의 책판을 인출하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다. 『承政院日記』 영조 7년(1731) 6월 24일 乙卯

방의 목판을 활용해야 할 여지가 커지도록 하는 한 요인이었다.

외방의 목판과 중앙의 활자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었다. 목판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래도록 널리 전파 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영조대 ‘武經七書’를 軍器寺에서 활자로 간행하려다가 서책을 ‘널리 배포하고 오래 전하려면’[廣布久傳] 목판으로 새기는 것이 낫다는 이유로 關西(평안감영)에 보내어 목판으로 간행하도록 한 예가 있다.⁵⁸⁾ 영구히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목판이 鑄字(금속활자)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⁵⁹⁾ 또 기존의 목판을 활용하게 되면 서둘러 주자로 인출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장점도 있었다.⁶⁰⁾ 1745년 (영조 21) 『續大典』의 인출 시에도 활자 인출은 쉽게 詛誤가 발생하고, 목판은 오래 전할 수 있기에 事功이 省減된다는 의견에 따라 교서관에서 목판으로 간행 하도록 하였다.⁶¹⁾

“彙貞曰 臣於頃日召對時 以唐鑑件數 (중략) 只此七件 實爲不足矣 慶尙監營 有此板本云
今雖刻甚 使之印送數件 則似好矣 (중략) 上曰 (중략) 卽今所存 只是六件 則誠苟艱矣 若
以鑄字印出 則有校正之役 必多費物力 芸閣如有木板 印出五六件則好矣 尙星曰 芸閣若無
木板 則分付嶺營 限五六件急速印出 以爲進上之地 何如 上曰 依爲之”

58) 『承政院日記』 영조 12년(1736) 5월 2일 乙未 “魚有龜所啓 (중략) 而武經七書, 合以計之
則爲十五券 (중략) 且與芸閣進講冊子 印出相值 各樸匠人及鑄字 亦難推移取用 且書冊之
廣布久傳 莫如木板之剞劂, 臣意則下送兩南, 使之開刊似宜, 下詢大臣而處之 何如 宋寅明
曰 此刪合有木板 下送關西開刊 亦無妨矣 紙地視嶺南雖貴 而貿用何難乎 上曰 此冊子自政
院取來入之 御覽後還下備局 下送關西 以木板開刊事 分付 可也”

59) 『承政院日記』 영조 3년(1727) 3월 26일 癸丑 “上曰 木版 何如 敦中曰 以永久之道言之 則
木版 似優於鑄字矣”

60) 영조대 『宋鑑』을 교서관에서 활자로 인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금속
활자는 ‘速成’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정밀하지 못하고 ‘倒印’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
었다. 『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5월 27일 戊午 “龍慶曰 (중략) 校書館宋鑑印出之役
逐日催促 (중략) 故更以速印之意督促 而鑄字異於木板 其所稽遲 勢固然矣 更當各別申飭
矣 上曰 今番不能周密爲之故然矣 向時稟定時 已知有不及之弊矣 鑄字異於木板 如欲速印
則必致不精”; 『承政院日記』 영조 2년(1726) 6월 19일 庚辰 “上曰 鑄字印出 若速成則必
不精 或有倒印之弊 夜對則既有心經 此後勿爲督役 可也”

61) 『承政院日記』 영조 21년(1745) 3월 28일 庚子 “(徐)宗玉曰 繼大典今幾釐正 而活字印出
之際 易致詛誤 且木板可以久傳 而事功省減 以木板刊印爲好 大臣之意如此矣 上曰 木板刊
出事 分付芸閣 可也”

목판이 부가적인 작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은 한번 조성된 목판이 장기간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활자는 速成으로 인출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그 단점은 무엇보다도 한번 인출하면 해체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인쇄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鑄字는 허물어 버리면 아까우므로 三南에서 천천히 목판에 새기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⁶²⁾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또 목판은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까닭에 활자본을 毀版한 뒤에도 목판으로 새긴 圖說 부분만이 남게 되어 차후의 목판 간행 시에 재활용한 예도 있다.⁽⁶³⁾

進講할 때 사용하는 책자를 소량 인출할 때는 기존의 목판이나 활자로 인출하도록 한 사례에서 드러나듯,⁽⁶⁴⁾ 활자는 소량의 서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인쇄 수단이었다.⁽⁶⁵⁾ 이렇게 소량 인출에 부담이 적은 활자의 특성 때문에 때로는 활자가 筆寫로 精書하는 작업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1734년(영조 10)에 『(詩經)大全』의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왕이 열람하기 불편하니, 홍문관에서 大文과 大旨만 精寫해서 들이도록 했는데, 분량이 많지 않아 활자로 인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⁶⁶⁾ 활자는 소량의 인쇄를 하는 데 유리

62) 『承政院日記』 영조 46년(1770) 5월 9일 乙酉 “(金)致仁曰 編輯廳事 有所仰達矣 鑄字 排置甚難 毀之甚惜 今番印出累件廣布後 令三南徐刻木版 則當爲省費之道矣”

63) 교서관에서 활자로 찍은 『喪禮補編』을 嶺營에서 다시 판각할 때 도판 부분을 재활용하도록 하였다. 『承政院日記』 영조 29년(1753) 5월 21일 丙子 “明履曰 喪禮補編 曾有送嶺營開刊之命 而自芸閣印出者 用活字既印之後 旋即毀版 至於圖說則有板刻 方置在芸閣 然只有圖說板 不得爲全備 若以此下送嶺營 使之補於新板 則可以省費 卽爲下送之意 分付芸閣何如 上曰 依爲之”

64) 進講의 일정과 수요에 맞추어 신속히 소량을 인쇄할 필요가 있을 때 활자가 애용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承政院日記』 영조 2년(1726) 9월 12일 辛丑 “又啓曰 孟子畢講後 以中庸繼講事 曾已問議定奪矣 卽今孟子進講過半 中庸 令校書館 經筵所用十五件 以活字卽速印出 以爲繼講之地 何如” ; 『承政院日記』 영조 12년(1736) 10월 7일 丁卯 “金若魯 以弘文館言啓曰 畫講周易畢講後 繼講冊子 因領事獻議 以麟經爲定 而其次 以心經繼講宜矣事 命下 而春秋集傳印出事 下教矣 以此分付芸閣 經筵所用十五件 依舊例 以活字卽速印出 以爲進講之地 何如 傳曰 允”

65) 『承政院日記』 영조 2년(1726) 4월 9일 辛未 “鎮遠曰 雖值凶年 進講冊子 豈不爲之乎 外方或有好板之可印者 而如無 則以活字印出 似好矣 上曰 然則限十件印出事 分付 可也” 이 사례에서 영조가 제시한 10건 정도의 인출 수량은 御覽과 入侍 諸臣을 위한 것이었다.

한 수단이었기에 경우에 따라 필사 작업을 대체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활자가 대체로 소량 인쇄에 그쳐 상대적으로 ‘擴張性’이 적은 인쇄 수단이었던 점은 대외보안이 필요한 인쇄물을 활자로 인쇄하도록 조치한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예로 영조대 『兵將圖說』의 서문과 범례 부분을 목판으로 새겨 두면 ‘彼國’(清)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활자로 인출하도록 하였다.⁶⁷⁾ 이러한 사례들은 서적을 대량으로 넓은 지역에, 그리고 장기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데 있어서는 활자보다 목판이 더 널리 활용된 수단일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방 관아는 장기 보존과 대량 인출이 필요한 간행물에 적합한 목판 인쇄를 주로 활용하였고, 이는 중앙에서 1차로 편찬·간행된 책을 2차 간행하여 지방 사회에 보급할 때 유효한 수단이 되었는데, 이때 주로 활용한 인쇄 기법이 기존의 인출본을 저본으로 새로운 목판을 조성하는 작업인 ‘翻刻’이었다. 예를 들면 1728년(영조 4)에 일어난 戊申亂 진압의 전말을 기록한 『勘亂錄』을 껴내면서, 이를 먼저 활자로 刊布한 후, 이어서 兩南에 보내어 목판으로 개간하도록 조치하였다.⁶⁸⁾ 1736년(영조 37)에 『續五禮儀』도 먼저 서울에서 활자로 인출한 다음, 嶺營에 분부하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⁶⁹⁾

66) 『承政院日記』 영조 10년(1734) 6월 14일 戊午 “上曰 (중략) 而(詩經)大全則浩汗 玉堂只以大文與大旨 精寫以入 可也 宗城曰 玉堂有此冊 而木板所印 不合御覽矣 當依下教 精寫 謄出 而此不過爲二卷冊 以活字印出 亦似不難矣 上曰 欲便於展覽 故有此教而印出 則不可 謄書以入 而字樣則使之不小不大 可也”: 다음 사례도 寫字官의 활용이 여의치 못할 때 활자인쇄를 택한 경우이다[『承政院日記』 영조 10년(1734) 6월 16일 庚申 “尙星曰 詩經大文 繕寫以進事 命下 而卽今寫字官中 稍爲善書者 以查對文書之舉行 實無從近寫出之暇 若又遲就時日 從容善寫 則亦非法講姑停間 必欲諷詠之聖意 以芸閣活字 急速印出 則恐似便宜 使校書館 精印一件 以爲御覽之地 何如 上曰 事勢如此 令芸閣 以衛夫人字字樣稍大者 印出 而所入財力 則各別從簡爲之 可也”].

67) 『承政院日記』 영조 25년(1749) 11월 23일 戊辰 “文秀曰 兵將圖說序文及凡例 刻置木板 則不無流入彼國之慮 以活字爲之 似好矣 上曰 予意亦然矣”

68) 『承政院日記』 영조 4년(1728) 5월 5일 乙卯 “光佐曰 (중략) 使之撰進 而以活字印出 頒布 何如 上曰 活字 一番用之 卽爲毀破 當以木板開刊 先以活字刊布 仍送兩南 以木板開刊 可也”

69) 『承政院日記』 영조 37년(1761) 10월 27일 壬辰 “彝章曰 繕五禮儀 開板一版 問於芸閣 則其時自本館 卽以鑄字印出 而慶尙監營 亦有木板 蓋聞其時 自京先用活字印出 而又分付嶺

상기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번각의 대상이 되었던 중앙의 간본은 대개 활자본인 경우가 많았다. 활자는 한번 인쇄한 후 해체되기 때문에 지방까지 널리 배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적 신속히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런 까닭에 중앙에서 1차로 소량을 활자 인쇄하고, 지방에서 活印本을 바탕으로 번각한 목판으로 2차 인출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되었다.⁷⁰⁾ 외방의 목판은 보급할 대상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대량 인쇄하는 데 유용하였기에 2차 간행 수단이 되었다. 木刻은 활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물력이 들어갔지만,⁷¹⁾ 시간을 두고 전국적으로 대량 인쇄하여 배포하는 데는 적절한 수단이었다. 이때 중앙에서 찍은 기성의 활자본은, 지방 관아의 입장에서 볼 때 목판에 새기기 전에 원고를 정서하는 작업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외방 관아에 번각을 맡긴 것은 중앙-외방 사이의 간행 협력 체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 첫째로 여러 관아에서 동시에 다발로 작업이 진행되었을 때의 효율성을 들 수 있다. 여러 감영이 협동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기간의 대량 인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1796년(정조 20) 정조의 명으로 펴낸 韻書『御定奎章全韻』은 公私 5천 건씩, 도합 1만 건을 인출하고자 兩西와 三南 감영에서 開板하도록 하였다.⁷²⁾ 중앙-외방의 협력체계로 인하여 여러 감영을 복수의 인쇄소로 가동시킬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동시에 다발적 인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明義錄諺解』는 兩南監營(전라, 경상감영)에 번각을 맡겨

營 刊行木板云矣 上曰 今亦依此爲之”

70) 물론 중앙의 목판본을 지방에서 다시 목판으로 번각한 예도 있다. 예컨대 1734년(영조 10) 『農家集成』을 인출하면서 목판으로 8건을 인출하여 팔도에 보내고 각도에서 인출하여 널리 배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承政院日記』 영조 10년(1734) 1월 14일 辛卯 “上曰 農家集成 此非頒賜內入[八]件 啓下之事 故單子之不下 蓋由於此 只令本館 以木板印出 八件 送于八道 使其道傳印廣布事 分付”].

71) 『承政院日記』 영조 4년(1728) 5월 13일 癸亥 “上曰 册子刊布時 活字易傷 故使之木刻矣 第木刻 物力多入 先以活字印出 仍送兩南 以木板開刊 可也”

72) 『承政院日記』 정조 20년(1796) 8월 7일 己卯 “上曰 韵書頒賜 以新舊抄啓文臣分排 使之傳給 則似易矣 日省錄中 亦爲詳載 而以公私各五千件印出之意入錄 而兩西三南監營 可以開板處開板 以爲廣布之地好矣”: 『承政院日記』 정조 20년(1796) 8월 11일 癸未.

배포하였고,⁷³⁾ 刑具의 규격을 규정한 『欽恤典則』은 경기도를 제외한 七道에 번각하여 다시 道內의 邑鎮에 배포하도록 하였다.⁷⁴⁾

둘째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민의 책판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번각한 목판을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두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중앙에서 매번 각 군현의 수요량을 인출해서 내려 보내는 것보다 효과적이었다. 한 예로 정조는 1797년(정조 21) 鄉村民의 교화와 관련된 서책인 『五倫行實圖』, 『鄉飲儀式』, 『鄉約條例』 등을 鑄字所에서 인출하여 여러 도의 營邑과 鄉校에 頒賜하도록 하였다. 또한 鄉曲의 士民으로서 인출을 원하는 자들이 서울에서부터 인출본을 받아와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兩南과 關西에서 활자본을 번각하여 도내에 印頒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때 ‘一鄉에 一件을 둔다’는 표현처럼 面里 단위까지 책자들을 보급하고자 힘썼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보급대상자인 외방 백성과의 목판 사이의 접근성과 활용 가능성을 배려한 조치라 하겠다.⁷⁵⁾ 유사한 사례로, 정조는 감영에서 번각한 『흡출전칙』의 목판이 그곳의 藏板이 되도록 하여, 영구히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널리 퍼지기를 기대했다.⁷⁶⁾

73) 『承政院日記』 정조 1년(1777) 1년 4월 10일 乙巳 “上曰 明義錄印出後 令兩南監營 翻刻板本 各置本道 以爲廣布之地 各五十件式 印上事 分付”. 公州監營에서도 『明義錄』을 간행하여 소장한 사실이 확인된다(金昭姬, 2017 「충청감영의 서적 간행과 책판: 조선후기 公州 監營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72).

74) 『承政院日記』 정조 1년(1777) 12월 28일 庚申 “上曰 京畿則第當刊布 其他七道 則自監營翻刊頒布則 似好矣 允鈺曰 此甚便好矣”: 경기와 兩都(개성, 강화)는 서울에서 가까운 땅이라는 이유로 藏板을 하는 대신, 芸閣本을 인출하여 배포하도록 했다[『承政院日記』 정조 2년(1778) 1월 13일 甲戌].

75) 『승정원일기』 정조 21년(1797) 3월 1일 辛丑 “(李)晚秀曰 五倫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之特命編成 寔出於因今返古 化民成俗之聖意 今將次第印行 廣布京外諸道營邑及鄉校頒賜件當自鑄字所印出 待啓下分頒 而至於各邑書院及鄉曲士民之願印者 皆欲自京印頒 則件數太多 難以舉行 印役告訖後 下送各一本於兩南及關西 使之翻刻印頒於道內 他道則各以近道從便印去 以爲廣頒之地 而鄉飲儀式鄉約條例 既有新頒儀節 則必須一鄉各置一件 方可按而行之 令諸道道臣 酌量面里 分排件數 倘無遺漏混淆之弊 畢頒後 形止卽爲狀聞事 知委似好 故敢此 仰達矣 上曰 依爲之”

76) 『承政院日記』 정조 1년(1777) 12월 27일 己未 “上曰 此冊只子令芸館印頒八道 則爲官長者 只有一件而已 土民則全不知有此冊子 殊非廣布之道 予意則各頒一件於各道監營 使之翻刻頒布 仍爲藏板 則不但爲永久之道 亦可爲廣布民間 事甚便好”: 『欽恤典則』에는 ‘中外藏板’이라는 刊記에서 있어서 목판을 활용한 전국적 보급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외방의 인출 협력체계에서 번각은 다양한 연계 작업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일 뿐이었다. 실제 개별 사례별로 간행 및 배포 장소나 인쇄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었다. 예컨대 『御定朱書百選』 등을 전국 주부군현에 각 1건씩 배포하고자 하면서, 서울의 活印本은 호서·관동·관북·四都(4곳의 留守府)에 보내고, 이를 내각(규장각)에서 번각한 책은 경기·해서에 보내면서, 영남·호남·관서는 본도의 藏板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⁷⁷⁾ 중앙과 외방의 간행 역량이나 인출 수량에 따라 활인본과 번각본 및 기존 목판본을 적절히 병행하여 배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서적의 내용이나 인출 수량, 보급 대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키워 주었다.

3. 윤음의 간행과 전국적 보급

윤음은 지방의 민인에게도 국왕의 뜻을 폭넓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영조·정조 시기에는 인쇄본으로 다수 간행되었기에 전국적인 서적의 간행 및 보급 체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官主導의 인쇄 문화가 당시 국왕 주도의 정치운영과 대민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의미가 있다. 본 장에서는 주로 정조 시기 윤음의 간행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떤 독자층을 대상으로 보급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앙-외방 사이의 서적 간행 체계가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이 된 조선시대 윤음의 목록 및 판본 사항 등은 〈부표〉 ‘역대 윤음 목록’에 정리하였다.

77) 『承政院日記』 정조 24년(1800) 4월 13일 乙未 “傳于徐有聞曰 (중략) 甲寅新印御定朱書百選 己未新印御定雅誦 四都八道三百州府郡縣 各頒一件 藏于校宮 如太學之尊經閣 雅誦則既活印翻刻 以壽其傳 而朱書百選 則兩南關西 雖已翻刻 京中則只有活印本 令內閣 一體翻刻 湖西關東關北及四都 以內閣所藏活印本 先爲下送 京畿·海西 待內閣開板印出下送 嶺南湖南關西 以本道藏板印出 與今下雅誦 同爲分頒 傳域中之冠儒服儒者 皆知予尊朱之意事 下諭諸道”

1) 윤음의 작성 의도와 諺解

영조는 소책자 규모의 ‘御製訓書’를 다수 저술하였으나, 정조는 규장각 출신의 신료들과 함께 御定書와 命撰書 같이 비교적 거칠의 간행 사업을 벌였다.⁷⁸⁾ 전통적으로 중앙에서의 인출 작업을 주도하던 교서관 이외에 奎章閣이 서적 간행의 중요 거점으로 기능을 다했다. 그런 가운데 신료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訓諭하는 내용의 ‘綸音’이 정조 재위기에 독립된 저술로서 눈에 띄게 빈번하게 저술·간행되었다.

〈부표〉에서 파악한 영조·정조대 윤음 가운데 국왕의 저술을 頒賜하면서 책에 기입하는 ‘內賜記’ 등을 통해 파악 가능한 배포 대상자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內賜記 등의 기록에 나타난 윤음의 배포 대상

서명	간행년	내賜記 등에 나타난 배포 대상	유형
御製守城綸音	1751년(영조 26)	五臺山吏庫, 赤裳山吏庫	사고
御製戒酒綸音	1757년(영조 33)	중앙(승정원, 홍문관, 예문관, 시강원, 의정부, 육조, 한성부, 사현부, 사간원), 외방(팔도, 3곳의留守府)	중앙 및 지방 관청
御製綸音	1776년(정조 즉위)	吏曹, 大司諫, 副司直 등	중앙 관청 및 신료
諭入庭宗親文武百官 綸音	1782년(정조 6)	奉朝賀, 副司直, 司憲府 掌令, 弘文館 副修撰, 黃海觀察使(黃景源)	신료
諭中外大小臣庶綸音	1782년(정조 6)	連山縣, 安東府, 右議政, 戶曹佐郎, 副司直, 奉常正, 訓鍊主簿	지방 관청 및 신료
御製諭原春道嶺東嶺 西大小土民綸音	1783년(정조 7)	承政院 注書, 前郡守	신료
諭湖南民人等綸音	1783년(정조 7)	求禮縣, 吏官	지방 관청, 신료
字恤典則	1783년(정조 7)	伊川府, 价川郡守	지방 관청, 신료
曉諭綸音	1784년(정조 8)	獻陵令(安鼎福)	신료

78)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면서 ‘先朝(영조조)에서 편찬하는 사람을 設施하여 오로지 어제를 관장하였는데, 그 일만 있고 관직이 없었다’고 회고하였듯이, 영조대 어제서 간행을 바탕으로 군신 간의 학술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정조대 규장각 近臣을 중심으로 한 학술 활동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이정민, 앞의 논문, 371-372면).

御製飭諭武臣綸音	1785년(정조 9)	奎章閣, 各 史庫	중앙 관청, 사고
御製諭咸鏡南北關大 小民人等綸音	1788년(정조 12)	安邊府使	지방 관청
御製表忠綸音	1788년(정조 12)	鼎足山史庫, 太白山史庫, 五臺山 史庫, 承政院 左承旨, 右副承旨, 故參議家(柳承鉉), 幼學(李樂鉉)	사고, 신료, 士人
加髢申禁事目	1788년(정조 12)	殷栗縣, 高原縣	지방 관청
諭諸道臣綸音	1794년(정조 18)	慶尙道觀察使	신료
御製養老務農頒行小 學五倫行實鄉飲儀式 鄉約條例綸音	1797년(정조 21)	경상도 각 군현 지방관 75명 이상	신료

이 표에서 나타나듯 史庫 및 중앙·지방 관청, 신료 개인이 반사 대상으로 나타나는 데 그쳤다. 그 밖에 전직 관원, 幼學이 포함되어 있으나,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형식을 띠는 내사기의 특성상 士族 이상의 신분만 포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諭～～民人綸音’과 같은 형식의 윤음 표제가 보여주듯 다수의 윤음들이 일반 평민을 독자로 내세우고 있었음을 명백하다.

국왕의 윤음을 지방 군현민에게까지 전파한 것은 정조 이전에도 이루어졌던 일이었다. 1794년(정조 18) 제주목사 沈樂洙의 장계에 따르면, 제주 관아에 숙종과 영조 때의 윤음이 소장되어 있다는 보고가 보인다.⁷⁹⁾ 영조대에도 민인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는 윤음이 일부 간행·배포된 바 있었다. <부표>에 따르면 총 23종의 윤음이 확인되며, 이 중 『御製守城綸音』, 『御製戒酒綸音』, 『御製科弊釐整
綸音』, 『諭金吾秋曹兩司綸音』 등 4종은 금속활자 및 목판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어제계주윤음』은 금주령이라는 대민 시책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보니 외방의 팔도와 유수부에도 배포하였다. 비슷한 내용을 담은 『어제경민
음』도 교서관의 활자본을 각도에 보내 간행·배포하도록 하였는데, 정조가 윤음을 전극적으로 간행·배포하는 데 있어서 전범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영조대 윤음이 대부분 필사본으로 작성되는 데 그친 것에서 드러나듯, 윤음을 본격적으로 백성과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印本으로 펴내고 외방

79) 정조가 도합 네 통에 이르는 윤음을 모아 한 책으로 精書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많은 분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正祖實錄』 18년(1794) 4월 19일 乙亥].

의 민인에게 널리 전파된 것은 정조대에 이르러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조의 윤음은 영조의 御製書처럼 적은 분량이었지만, 전국적 보급을 위해 중앙과 외방의 협력체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돋보인다. 정조대 윤음이 보다 폭넓은 보급을 필요로 했던 까닭은, 정조가 윤음을 대민 소통의 유용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이었다. 緯音을 읽고 ‘愚夫愚婦도 감읍했다’는 조정의 평가는 윤음을 하층민에 읽힘으로써 왕정에 대한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했음을 잘 보여준다.⁸⁰⁾ 정조는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罔民’이라는 孟子의 말을 인용하며, 윤음을 중외에 반포하여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의미를 설명했다.⁸¹⁾

정조대 윤음 중에는 국왕이 직접 지은 ‘御製’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정조가 직접 지은 윤음의 내용을 신하들이 읽었는지 확인하며 그 소감을 묻기도 한 사례⁸²⁾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1783년(정조 7)의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緯音』(이하 『관동윤음』으로 약칭)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감을 청취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정할 문구나 내용 등을 검토하기도 하였다.⁸³⁾

영조도 직접 저술한 어제서를 널리 반포하여 자신의 뜻을 신료와 백성과 공유하고자 하였으나, 경전에 대한 강론이나 의리의 천명, 詩文의 賦進 등 학술적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⁸⁴⁾ 이와 달리 정조의 윤음은 民生의 문제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정조는 1783년(정조 7)에 내린 여러 윤음에서 ‘백성이 있은 다음에야 국가가 있게 된다’고 강조하며 백성을 구하기 위한 시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⁸⁵⁾ 이러한 뜻에 따라 정조대 윤음은

80)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9월 14일 戊申.

81) 『承政院日記』 정조 즉위년(1776) 7월 4일 癸酉.

82)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0월 11일 己巳 “上曰 日昨湖南緯音見之乎 煙曰 臣亦見之而湖南年事若是歎荒 賴聖上宵旰之憂 誠爲可憫 自上親製緯音 丁寧惻怛之意 蕤然於言辭之表 遇氓聞此 孰無感激愛戴之誠也”

83)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0월 24일 壬午 “上曰 關東緯音 卿等見之乎 存謙曰 未及見之矣 上曰 有司堂上進讀緯音 可也 有隣進讀訖 上曰 此非過語也 書此之時 心甚慘然矣 弘淳曰 辭意之惻怛 尤過於前度緯音矣 (중략) 上曰 緯音中節材二字 以何字改之 則的知其爲參乎 福源曰 稱以節材 則參亦包在其中 恐不必改之矣”

84) 權奇奭, 2018 「英祖 御製書의 頒布 대상과 간행 방식」 『韓國史研究』 182.

홍년시의 구휼과 조세의 감면 등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1783년의 『관동윤음』에서 실제 재난을 입은 백성을 구제한다는 내용이나,⁸⁶⁾ 1784년의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身軍布折半蕩減綸音』(이하 『탕감윤음』으로 약칭)에서 군포를 탕감하는 등의 내용은⁸⁷⁾ 곧 백성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조의 윤음은 단순히 백성을 위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책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담고 있었다. 1784년(정조 8)에 제주도의 기근 때문에 내린 『御製諭濟州民人綸音』에는 진휼과 조세 감면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⁸⁸⁾ 같은 해 내린 『탕감윤음』은 왕세자의 책봉을 맞아 군포의 수량을 탕감해 주는 내용으로, 실제 탕감되는 군포의 군현별 액수까지 첨부하여 구체적 정책이 실행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⁸⁹⁾

정조의 윤음 중에는 하층민뿐만 아니라 지방 사족의 뜻을 살피는 내용의 윤음도 있다. 1794년(정조 18)의 『諭湖西士夫民庶綸音』은 호서 지역에는 사대부가 많고 이들이 전토의 수확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촌사족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뜻을 보이기도 했다.⁹⁰⁾

사대부를 주된 독자로 상정한 『유호서사부민서윤음』은 한문본으로만 작성되었지만, 다수의 윤음은 한문을 잘 모르는 하층민을 독자로 삼고 있었기에 ‘諺解’, 즉 한글 번역문이 추가되었다. 하층민을 위한 소통 수단이라는 언해의 기능은 이미 영조대에 국왕의 정치적 정당성을 홍보하는 『闡義昭鑑』 부류의 책에서도 나타난 바 있는데, 정조 초년의 정치적 사건을 다룬 『明義錄』, 『續明義錄』⁹¹⁾ 등

85) 정조는 1783년(정조 7) 9월에 내린 『諭京畿民人綸音』에서는 ‘백성이 있은 다음에야 국가가 있게 되고, 국가가 있은 다음에야 還穀과 飼米도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며, 還上의 停退를 명했다(『정조실록』 7년 9월 22일 庚戌). 같은 해의 『諭湖南民人等綸音』에서도 ‘백성이 있은 다음에야 국가가 있게 되는 법’이라는 언급이 나오며(『정조실록』 7년 10월 8일 丙寅), 관동 민인에게 내린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土民綸音』을 발표하고 나서는 ‘백성이 있은 다음에야 국가가 있게 되는 법이니, 蒼生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느냐’고 여러 신하들에게 따로 말하기도 하였다(『正祖實錄』 7년 10월 23일 辛巳).

86)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0월 23일 辛巳.

87) 『承政院日記』 정조 8년(1784) 8월 21일 甲辰.

88) 『正祖實錄』 8년(1784) 11월 29일 庚辰.

89) 『正祖實錄』 8년(1784) 8월 2일 乙酉.

90) 『正祖實錄』 18년(1794) 11월 3일 丁亥.

도 언해되어 반포됨으로써 그 저술 목적과 방식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를 ‘義理明辯書’들도 대개 윤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음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정조대 윤음 중에도 송덕상의 죄상을 성토하는 1782년(정조 6)의 『諭海西綸音』과 같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처분을 다룬 것도 비슷한 부류로 볼 수 있다.⁹²⁾ 그 밖에 『加飭申禁事目』 등 백성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는 각종 규정, 『字恤典則』과 같이 백성을 구휼하는 방침을 담은 법령집⁹³⁾ 등도 ‘윤음’이란 표제를 달지는 않았지만, 언해본이 함께 간행된 바 있다.

정조는 다수의 윤음에서 한문본과 한글본을 함께 인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부표〉에서 파악한 정조의 윤음 중에서 여러 윤음을 한 책으로 묶은 ‘합본’ 등을 제외하면 43종 정도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諺解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27종 정도로서 전체의 60%가 넘는다. 언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諭入庭宗親文武百官綸音』, 『諭海西綸音』, 『崇儒重道綸音』, 『御製諭大小臣僚綸音』, 『褒忠綸音』, 『御製勅諭武臣綸音』, 『諭湖西士夫民庶綸音』, 『諭華城城役董工諸臣綸音』, 『諭嶺南父老土民綸音』 등과 같이 관료나 사대부 등 식자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민생 문제와 관련성이 적은 것들이 다수이다. 영조대 윤음의 경우 『御製守城綸音』, 『御製戒酒綸音』, 『御製科弊釐整綸音』의 3종이 활자 및 목판으로 인출되어 널리 보급되었는데, 이 중 『어제계주윤음』만 언해가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⁹⁴⁾

한문본과 언해본이 합본된 정조대 윤음의 일례를 들면 1797년(정조 21)의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綸音』(이하 『향약윤음』으로 약칭)은 ‘眞諺’(한문과 한글)의 두 가지 언어로 印本을 만들도록 했다.⁹⁵⁾ 윤음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은 교서관이 주도하였다. 1783년(정조 7)에는 정조가 구술한

91) 『正祖實錄』 2년(1778) 1월 6일 丁卯. 정조는 『續明義錄』을 眞書(漢文)와 諺文(한글)으로 印出하여 반포하고 여러 道臣(관찰사)들로 하여금 방방곡곡에 선포하도록 했다. 또한 『明義錄諺解』는 각 군영에 전파하며, 校隸나 軍伍 같은 미천한 자에게도 分頒하도록 했다 [『承政院日記』 정조 2년(1778) 윤 6월 17일 乙亥].

92) 『正祖實錄』 6년(1782) 8월 14일 戊寅.

93)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1월 12일 己亥.

94) 영조의 御製書 중에서 『御製百行源』이나 『闡義昭鑑』 등 더 많은 언해 사례를 찾을 수 있다.

95) 『承政院日記』 정조 21년(1797) 1월 12일 癸丑 “上曰 綸音印出之役 今幾訖工耶 晚秀曰 眞諺印本 俱已竣事 今當入啓矣”

『관동윤음』을 도승지에게 명하여 교서관으로 출급하여 인출하도록 하면서, 한문과 한글로 翻出하도록 하고⁹⁶⁾ 그 언해본을 교서관으로부터 가져오도록 명했다.⁹⁷⁾

정조대 윤음의 간행으로 언해 작업의 수요가 이전보다 많아진 사실은, 언해본을 활자로 인출하는 과정에서 새로 조성해야 하는 글자가 많아서 자연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1782년(정조 6)의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을 인출하면서, 정조는 윤음을 베껴서[謄出] 반포할 경우 매번 지체되는 폐단을 줄이고자 인쇄하도록 하는데도 계속 지체되는 까닭을 물었는데, 그 요인 중 하나는 鑄字 중에서 諺字(한글활자)를 새로 새겨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정조는 한글활자의 주조 수량을 늘이도록 하여 이후로도 적극 활용할 뜻을 밝혔다.⁹⁸⁾

2) 외방 관아를 활용한 대량 인출과 배포

윤음이 언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민인을 독자로 삼았기에 많은 수량을 작성하여 전국 곳곳에 전파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⁹⁹⁾ 이 때문에 중앙과 외방의 서적 간행 및 보급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정조대 王政의 적극성으로 인해 중앙과 외방의 인쇄 역량의 활용이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官主導 인쇄술의 전통은 국가가 주도하여 지식·사상·문화 등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정조는 이를 대민 정책에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정조가 이전의 국왕과 차별화되는 점은, 인쇄기술이나 역량을 현저히 발전시켰다기보다는 그 활용처와 활용방식을 새로이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윤음을 인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중앙과 외방의 간행협력체계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96)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0월 23일 辛巳 “上命浩修 讀諭關東民人綸音 (中략) 仍命昌順曰 都承旨以此出給芸館 使之印出 沈有鎮旣命待令 使之眞諺翻出 件數從當下敎矣”

97)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0월 24일 壬午 “上曰 校書館綸音諺釋 如已印出 持入”

98)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11월 9일 任人 “上曰 綸音頒布 以謄出之役 每患遲滯 故特以省弊之意 使之印頒 而又復遲滯 果何故耶 有鎮曰 鑄字中諺字 多有新刻者 而且白綿紙件則漬水印出 故自爾遲滯矣 上曰 諺字亦依他活字樣 多數鑄置無妨矣”

99) 윤음의 전파 과정에 대해서 기존 연구(신명호, 2017 「조선후기 級音의 傳達過程」『동북아문화연구』 52)에서는 ‘왕→승지→(비변사)→관찰사 및 유수→지방관→面任·里任·洞任→양반 또는 民’으로 파악하여 다룬 바 있다.

중앙과 외방이 인출 작업을 서로 협력하는 경우에도 완성된 원고를 받아 인출하는 초기 작업은 교서관 등 중앙 관서에서 주도했다. 1783년(정조 7)의 『御製諭咸鏡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또는 『북관윤음』)의 초고를 승정원의 승지·주서 등이 교서관에 가져가서 인출한 것이 확인된다.¹⁰⁰⁾ 内閣 곧 규장각이 정조대 윤음의 간행을 담당한 경우도 있었다. 1784년(정조 8)에는 經筵에 나오는 諸臣에게 작일 내린 『褒忠綸音』을 内閣에서 다수 인출하여 頒賜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¹⁰¹⁾

지방에 배포할 수량이 많지 않을 경우 중앙에서 지방에 보급할 뜻까지 인출하여 내려 보내기도 하였다. 예컨대 1782년(정조 6) 『諭海西綸音』은 처음에 베껴서 배포하려고[謄布] 하다가,¹⁰²⁾ '謄書는 인출만 못하다'는 이유로 간행하여 황해도 감영과 각읍에 보내도록 하였다.¹⁰³⁾ 이때의 배포 수량은 황해도 감사를 비롯한 지방 수령에게 보낸 것이 56건, 중앙관서에 보낸 것이 7건 정도로 파악된다.¹⁰⁴⁾ 1782년(정조 6)의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도 유사한 사례이다. 이 윤음은 湖西 道伯[관찰사]에게 下諭하여 道內 民人에게 曉諭하도록 하였는데, 畿甸綸音의 전례에 따라 교서관에서 謄書로 번역하여 간행하도록 하였다. 인출은 교서관에서 맡고, 배포는 충청감영에서 담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¹⁰⁵⁾

100)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0월 28일丙戌 “上曰 都承旨尙在校書館否 注書出去 知入賤臣承命出 回奏曰 都承旨尙在校書館云矣 上命賤臣 持北道綸音草 往校書館 傳于都承旨 使之初二日前 畢印以入 賤臣承命往傳 卽爲復命”

101) 『承政院日記』 정조 8년(1784) 9월 1일癸丑 “又下教曰 昨下綸音 自內閣 多數印出 今日 登筵諸臣 列書姓名 各爲頒賜事 分付”

102)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8월 14일 戊寅 “按問使與監司 將此綸音 詳諭於諸罪人 仍爲遍頒道內各邑土民等處 (중략) 仍傳曰 綸音一通書下 卿其祗受後 (중략) 綸音則面飭道伯 仍即謄布列邑後 卿則即爲復路事 下諭于黃海道按問使沈願之處”

103)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8월 15일 己卯 “又傳于曰 謄書不如印出 綸音纔已刊印之故 一件送之 卿其領受事 傳諭諸大臣處”

104)備忘記에는 해서윤음의 배포 대상이 기재되어 있는데, 黃海監司 黃昇源이 4건, 兵使 申應周가 2건, 黃州牧使, 海州判官이 각 1건, 襄津水使 1건, 延安府使, 谷山府使 등 19개 군현 수령에게 각 2건, 平山府使 10건 등을 감사를 통해 하송하도록 했다. 이들을 모두 합산하면 56건이 된다. 그밖에 중앙관서인 승정원, 玉堂, 예문관, 禁府, 刑曹, 左右捕廳에 각 1건을 사급하도록 했는데, 이들을 합산하면 7건이 된다[『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8월 15일 己卯].

105)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11월 3일丙申 “仍傳曰 此綸音一通 自政院成送有旨 下諭

상기 사례에서 나타나듯 윤음의 배포 수량이 많지 않을 경우 등서, 즉 베껴 쓰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활자 인쇄, 즉 活印은 베껴 쓰는 것에 비해서 다수의 책자를 만드는 데 편리할 뿐 아니라, 신속한 작업에도 도움이 되어 자주 활용되었다. 1783년(정조 7) 정조는 근래 윤음을 등서할 때 매번 지체되어 편한 것을 따르고자 活印하도록 하면서 外閣(교서관)의 工匠輩들의 勞役이 적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¹⁰⁶⁾

윤음 전파에 있어서 베껴 쓰는 방식은 같은 해 『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의 배포 과정에서 보이듯,¹⁰⁷⁾ 중앙정부에서보다는 윤음을 지방에서 여러 면리로 전파할 때 자주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절차를 보면 道伯[관찰사]이 윤음을 祇受하면 列邑에 널리 반포하고, 邑宰[수령]가 베껴 내어[騰出] 각 面里에 書給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다.¹⁰⁸⁾ 이 경우 적어도 군현 이하의 단위에서는 ‘印出’, 즉 찍어내는 방식 아니라, ‘騰出’, 즉 베껴내는 방식이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83년(정조 7)의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이하 『육도윤음』)은 관찰사가 인쇄·필사한 윤음을 관하의 营·邑·鎮官長으로 하여금 다시 필사하여 방방곡곡에 전파하도록 것으로 확인되며, 기존 연구에서는 村里의 주민에게 필사하여 전달하는 임무는 面任·里任·洞任에게 맡긴 것으로 이해하였다.¹⁰⁹⁾

于湖西道伯 使之曉諭道內民人 傳各安土奠業 每至流散之境 飭諭如是其丁寧辛勤 而雖一夫一婦 不知有蠲稅之令 不聞有播告之舉 民情一味遑急 則安用此等旬宣之臣也哉 從當另行按廉 憑其實蹟 仍令各別惕念舉行 上曰 此綸音 依向日畿甸綸音例 以諺書反繹入刑事 分付校書館 可也”

106)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월 9일 辛丑 “命書傳教曰 近來綸音騰書之際 每致遲滯 雖以從便之意 使之活印 而外閣工匠輩 前後勞役不些 唱準以下員役匠手 自去秋京畿綸音 完役日字 自本閣區別 別單書入 監印堂上沈有鎮 特賜熟馬一匹”

107)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월 10일 壬寅 “備忘記 傳于朴天行曰 此綸音及下送錢文 胡椒祇受印本綸音 今日內 遍頒諸邑 監營營上 尤甚 · 之次 · 稍實等邑 一依後錄頒給 仍令地方官 謄出各本 面面里里 星火宣布 使一夫一婦 咸須見知 傳民情 得以奠安”

108)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월 18일 庚戌 “備忘記 今下綸音 卽其祇受後 遍頒列邑 仍令邑宰謄出 面面里里書給 雖一夫一婦 無不聞不知之弊 如是下教之後 從當另加廉察 萬一有不善頒示 則卿與該邑守宰 難免重勘 卽其各別惕念 各驛及各鎮 自卿營及統兵水營 謄出遍布 竝與帑錢及貂皮分俵數爻 依畿湖例 條列狀聞事 下諭于嶺南伯”

이 과정에서 전라도 興德縣에 거주하던 사족 頤齋 黃胤錫(1729~1791)의 증언이 큰 참고가 되는데,¹¹⁰⁾ 이에 따르면 관찰사와 수령에게는 ‘奎章之寶’를 찍은 인쇄본 윤음을 하사하였고, 전직 文臣·武臣·蔭官으로 향촌에 있는 자에게는 감영에서 鑄印한 것을 나누어 주었으며, 지방의 백성에게는 필사하여 전하고 알렸다고 한다. 황윤석은 1783년(정조 7) 10월 ‘印鑄頒示’한 윤음을 흥덕현 관청에서 직접 보았고 이를 ‘印去’했다고 밝혔는데, 이 기록을 통해 흥덕현에서 번각하여 인출한 윤음을 계시해 두었고, 번각한 목판을 관청에 비치해 두고 인출해 갈 수도 있도록 배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흥덕현령은 언해한 것을 알리며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현령이 면임 등을 독려하여 구두 전파하기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에 다수의 예하 기관이나 지역에 보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서관 등 중앙관서와 지방 감영 등에서는 ‘등출’보다는 활자 또는 목판을 활용해 ‘인출’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다. 먼저 교서관에서의 인출 수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로 한다. 1783년(정조 7)의 『諭湖南民人等綸音』을 간행하는 중에 唱準들이 20건만 먼저 진상한 뒤에 각자 귀가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校書館에서 대략 600건을 인출하기로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¹¹⁾ 같은 해 『관동윤음』의 인출 수량은 작업 도중에 있었던 정조와 승지들 간의 문답에서 이미 700건은 끝냈고, 추후에 200건을 찍겠다는 언급으로 보아 총 900건 가까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¹²⁾ 대략 중앙에서 전국 군현에 2건 이상씩을 배부하고도 남을 분량을 인출하였던 것이다.

109) 신명호, 앞의 논문, 105-107면.

110) 황윤석이 흥덕현 내에서 윤음 전파에 대해 밝힌 내용과 이에 대한 분석은 신명호, 앞의 논문, 108-110면 참조.

111)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0월 11일 己巳 “浩修曰 綸音印役 昨已完訖 而二十件先爲進上後 唱準輩各自歸家 不卽分類以給 故以致粧穢之遲滯 餘數五百八十件 則今朝始爲入來 安寶工役未畢之前 唱準輩之任意歸家 萬萬痛駭 唱準雖如此 入直官員之全不檢飭 尤爲驚怪 校書館昨日入直官員 令該府拿問處之 赴役唱準等 並移送該曹 從重科罪 以懲日後 何如 上曰 依爲之 唱準則不必令攸司科治 自本館科罪 可也”

112)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0월 24일 壬午 “上曰 綸音印出幾件乎 知入 賤臣承命出回奏曰 七百件已爲畢役 追後二百件 今方始役云矣”

중앙의 간행 수량과 지역별 배포 수량이 함께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사례들도 있다. 1782년(정조 6)의 『諭京畿大小民人細音』은 먼저 서리들이 한문본[眞本] 30건을 쓴 다음, 諺譯에 익숙한 우부승지 등이 언해본으로 베껴서 1건을 들이도록 하였다. 이때 정조는 항곡의 ‘愚夫愚婦’도 자신이 백성을 위하는 지극한 뜻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번역해 베낄 것을 당부했는데, 일반 민인을 궁극적인 배포대상으로 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교정을 거친 후 眞諺本(한문-한글 합본) 250건을 外閣(校書館)에서 활자로 인출하면서, 관아별로 배포할 건수를 열거하였는데 다음 <표 2>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¹³⁾

<표 2> 『諭京畿大小民人細音』(1782)의 인출 및 배포 건수

배포처	배포 건수		비고
	印本	寫本	
경기감영	2	1	
광주부, 수원부	각 6, 총 12	각 2, 총 4	
여주목, 파주목, 양주목, 부평부, 남양부, 인천부, 장단부, 통진부, 안산군, 안성군, 고양군, 김포군, 교하군, 용인현, 진위현, 양천현, 과천현, 금천현 이천현 (19처)	각 6, 총 114	각 1, 총 19	감사를 통해 반포
죽산부, 고동부, 풍덕부, 가평군, 삼성군, 마천군, 영평현, 지평현, 포천현, 적성현, 연천현, 양성현, 음죽현, 양지현, 양근현, 영종진 (16처)	각 6, 총 96	0	
內閣	2	0	
奎章閣, 5處 史庫, 政院, 玉堂 (8처)	각 1, 총 8	0	
합계	234	24	

<표 2>를 통해 인본과 함께 사본도 배포에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대량

113)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8월 12일 丙子 “上曰 聞右副素嫗於諺譯云 與監印堂上鄭昌聖及右承旨徐有防左副承旨李在學 同往賓廳 多率能書書吏 眞本三十件 今日內書入 右副則與刑判 以諺譯詳細翻謄 一本入之 則當自內校正以下 右副持其校正本 與監印堂上出往外閣 眞諺合二百五十件 以活字監董印入 可也 蓋諺譯翻謄 使鄉曲愚夫愚婦 必欲知予爲民至意 俾有一半分安堵之事 卽等體予此意 詳細翻謄 可也”: 『承政院日記』 정조 6년 (1782) 8월 14일 戊寅.

의 인쇄에는 역시 인본이 더 유용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1도에만 배포하는 데에도 250건 가까운 수량이 필요했으며, 한 군현에는 인본 기준 6건 정도가 할당되었다. 서울과 가까운 곳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감영은 배포 역할만 하고 인출 작업은 교서관에서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1782년(정조 6)의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도 충청도(당시 명칭은 洪忠道) 지역에 배포한 수량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정조는 洪忠監司 金文淳에게 전교를 내려, 재해의 정도(尤甚, 之次, 稍實)에 따라서 수량을 달리하여 배포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¹¹⁴⁾

<표 3>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1782)의 인출 및 배포 건수

배포처	배포 건수	비고
洪忠監司(營上, 兵營, 水營)	3	
한산군, 서천군, 임천군, 면천군, 천안군, 온양군, 태안군, 덕산현, 평택현, 직산현, 연기현, 부여현, 석성현, 비인현, 서산현, 해미현, 당진현, 신창현, 아산현 (19처)	각 5, 총 95	尤甚
충주목, 홍주목, 대홍군, 公山判官, 문의현, 홍산현, 제천현, 정산현, 청양현, 음성현, 청안현, 은진현, 연산현, 이성현, 남포현, 진천현, 보령현, 예산현, 목천현, 서원현, 결성현 (22처)	각 4, 총 88	之次
청풍부, 괴산군, 옥천군, 단양군, 회덕현, 연풍현, 회인현, 진잠현, 전의현, 영동현, 황간현, 청산현, 영춘현, 보은현 (14처)	각 3, 총 42	稍實
합계	228	

200여 건에 달하는 배포 수량은 교서관에서 인출한 것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각읍의 수령에게는 면리에 배포할 때 이를 베껴내도록 했다.

이상의 두 사례를 통해서, 중앙에서 인출한 윤음의 일반적인 수량은 200~300 건内外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783년(정조 7) 1월에 인출한 윤음(『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으로 추정)도 300건을 인출했을 뿐만 아니라 번역도 마친

114)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11월 4일 丁酉 “又命書傳教曰 湖西綸音印本下送三件 卽其祇受後 (중략) 仍令各其邑守宰 謄出諸本 分布面里之意 卽其惕念舉行事下諭于洪忠監司金文淳處”

것이 확인된다.¹¹⁵⁾ 또한 이 정도면 대략 1개 道의 각 군현에 배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에서 인출과 전파를 총지휘하며 인출본을 해당 지역에 내려 보내 배포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외방으로의 대량 보급과 민인과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배포뿐만 아니라 인출의 책임도 외방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었다. 앞서 군현 배포분까지 중앙에서 인출하여 내려보낸 사례들이 대개 경기와 호서 지역이었던 데서 드러나듯, 서울에서 먼 지역인 경우 지방 감영에서 인출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예컨대 1783년(정조 7) 영남의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서 督運御史 金載人을 파견하면서 지은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은 경상감영에서, 『御製諭濟州民人綸音』은 전라감영에서 간행되었다.¹¹⁶⁾

외방 감영의 윤음 간행 현황을 개관할 수 있도록, 〈부표〉에서 파악한 정조대 윤음 중에서 외방에서 간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刊記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간행처와 인쇄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단, 여러 윤음이 함께 묶여 있는 '合本'은 제외한다.

〈표 4〉 刊記 등의 기록에 나타난 윤음의 간행처 및 인쇄 방식

서명	간행년	刊記 등에 나타난 간행처 (인쇄 방식)	비고
御製戒酒綸音	1757년(영조 33)	교서관(목판)	중앙 목판
御製綸音	1776년(정조 즉위)	교서관(활자)	중앙 활자
諭中外大小臣庶綸音	1782년(정조 6)	경상감영(목판)	외방 목판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 春咸鏡六道綸音	1783년(정조 7)	경상감영(목판), 전라감영(목판)	외방 목판
諭湖南民人等綸音	1783년(정조 7)	전라감영(목판)	외방 목판
字恤典則	1783년(정조 7)	교서관에서 활자 인출후 각도에서 목판 간행한 것으로 추정(간기 내용: '癸卯活印 中外藏板')	중앙 활자-외방 목판 연계

115)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월 17일 己酉 “綸音三百件 盡爲刊出矣 上曰 亦已翻易乎 在學曰 已皆翻易矣”

116) 〈부표〉 해당 항목 참조.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 史金載人書	1783년(정조 7)	경상감영(목판)	외방 목판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 身軍布折半蕩減綸音	1784년(정조 8)	경상감영(목판), 충청감영(목판)	외방 목판
綸音諺解	1784년(정조 8)	전라감영(목판)	외방 목판
御製諭濟州民人綸音	1784년(정조 8)	전라감영(목판)	외방 목판
諭諸道道臣綸音	1794년(정조 18)	전라감영(목판)	외방 목판

윤음의 경우 간기가 충실히 기재되어 있는 편은 아니라서 간행처의 파악에 한계는 있으나, 〈표 4〉의 사례들을 보면 중앙에서는 活字로 외방에서는 木板으로 인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字恤典則』에 있는 ‘癸卯活印 中外藏板’이라는 刊記를 통해서 중앙의 활자와 외방의 목판을 연계한 간행 체계가 윤음에도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과 외방이 인출 작업을 분담하기 위해, 교서관에서 간행 작업 전반을 주도하되 인출은 지방 감영에서도 병행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1783년(정조 7)의 『諭湖南民人等綸音』은 정조가 교서관에서 正書하여 반포하도록 지시한 데서 드러나듯 교서관에서 편찬을 주도하며 인출까지 하였으나,¹¹⁷⁾ 상당량의 인출은 完營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확인된다.¹¹⁸⁾ 정조는 호남에서 윤음의 인출을 마치고 여러 읍에 반포를 마쳤는지 여러 차례 확인함으로써, 중앙-외방의 인출 협력체계의 원만한 가동을 점검하였다.¹¹⁹⁾

중앙의 서적을 외방에 보급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던 ‘翻刻’ 방식이 윤음의 간

117)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0월 8일 丙寅 “上命有隣等曰 卽等退出芸館 正書頒布 而望哺民情 一時爲急 無或小緩也”

118)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0월 10일 戊辰 “上曰 綸音已爲謄送於完營乎 有隣等曰 然矣 仍命時俊曰 印出件草本持入”: 현존하는 판본 중에 ‘全羅監營 開刊’ 간기가 있는 것과 求禮縣에 내린 내사기가 있는 것도 확인된다(〈부표〉 해당 항목 참조).

119)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0월 13일 辛未 “上命有防 書傳教曰 湖南所下綸音 果已畢印 頒布列邑乎”; 정조 7년(1783) 10월 19일 丁丑 “上曰 完伯祇受綸音云耶 時俊曰 聞已祇受 卽爲刊布 而湖南一路 莫不仰頌德意云矣”; 정조 7년(1783) 10월 20일 戊寅 “又命書傳教曰 湖南綸音 趁今二十日 使之遍頒列邑 果已如期印布乎”; 정조 7년(1783) 10월 23일 辛巳.

행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한 예를 들면 1782년(정조 6) 12월에 발표되고 이듬해 1월에 刊印된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은 内閣(규장각)에서 인쇄되어 各道에 分送되었는데, 이 때 下送한 윤음의 수량은 431건이었다.¹²⁰⁾ 이 수량은 관찰사의 营門에 3건, 병영에 2건, 水營과 邊地의 各鎮에 각 1건, 도내 長官에게 각 2건, 그 밖의 열읍에 각 1건씩을 반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조는 이 수량으로는 군현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감영에서 번각하여 인출한 것을 열읍에 頒給하도록 지시하였다.¹²¹⁾ 읍별로 分送하는 수량은 大邑 10여 건, 小邑 6, 7건이었는데, 읍에서 다시 坊曲에 널리 배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수량보다 5~10배 정도 많은 인출본이 필요하게 되니 각도 감영의 번각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중앙의 인출본을 지방에서 번각 인쇄할 경우 중앙의 활자본(목판본일 수도 있음)과 지방의 목판본이 함께 전하는 경우가 많다. 1784년(정조 8) 『탕감윤음』도 활자본과 함께 嶺營과 錦營에서 간행한 목판본이 함께 확인된다.¹²²⁾

번각을 통한 대량인쇄로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외방의 목판이 갖는 장점인 對民 接近性이었다. 정조는 감영에 『諭中外大小臣庶綸音』을 전파하도록 명하면서 营門에서부터 校院의 儒生과坊曲의 士民을 모아서 상세히 讀諭하고, 수령을 신칙하여 각 읍에서도 이를 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校院에서 번각한 목판 1건을 소장하도록 하여, 士民들 중 원하는 자가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이는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목판을 활용하기를 기대한 것이었다. 정조는 이렇게 꼼꼼히 전파 요령을 지시하면서, ‘비록 궁벽한 시골에 있어도 한 명의 백성도 모르는 폐단이 없기를’ 기대하였다.¹²³⁾

120)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12월 27일 己丑.

121) 이 윤음은 嶺營(경상감영)에서 開刊한 판본이 확인되며, 충청도 연산현, 경상도 안동부 등에 내린 내사기가 있는 판본도 있다(<부표> 해당 항목 참조).

122) <부표> 해당 항목 참조.

123)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월 8일 庚子 “上曰 內閣所印綸音 當分送各道 而齋去之際 禁軍多數定送 則沿路諸邑 不無貽弊之慮 量其附送道 兼送一兩人 可也 念祖曰 聖教誠好矣 命書傳教曰 今以御製綸音四百三十件下送 其中三件 留置卿營門 兵營頒二件 水營及防禦邊地各鎮 各頒一件 道內長官各頒二件 其餘列邑各頒一件 又自卿營 龟刻印出 追後 頒給列邑 而大邑則十餘件 小邑則六七件 量宜分送 使各其邑 廣布坊曲 而今此綸音 係是

지방 관아의 번각은 중앙에서 감당하기 힘든 방대한 수량의 인출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것도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1783년(정조 7)의 『諭湖南民人等綸音』의 인출에 관한 전라감사 趙時偉의 보고에 따르면, ‘밤을 새며 入梓하고 星火와 같이’ 인출한 결과 7,940건을 頒布하였고, 각읍에서 추가로 요청한 수량 912건을 더하니 도합 8,852건이 되었다. 이들은 여러 읍의 各面과 各里에 頒給하기 위한 分량이었다. 이처럼 面里 단위까지 보급하다 보니 전라도 한 도에서 필요로 한 인출량이 1만 건에 가까웠고, 이를 전라감영에서 감당해 냈던 것이다.¹²⁴⁾

이렇게 대규모의 인쇄 역량을 갖춘 여러 감영이 동시다발적으로 번각을 할 경우, 전국적인 범위의 방대한 분량의 인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여러 도에 널리 전파해야 할 윤음은 각도에서 일제히 간행을 맡는 것이 상례화되었다. 1794년(정조 18)의 『諭諸道道臣綸音』은 제목 그대로 여러 道臣에게 曉諭하여 刊布하도록 한 것이 확인된다.¹²⁵⁾ 1783년(정조 7) 9월 정조는 『육도윤음』을 ‘한 명의 지아비와 지어미도 알고 듣지 못하는 수가 없게 하라’면서 여러 도의 방백 수령에서 謬解한 뒤에 방곡에 布諭하도록 명했다.¹²⁶⁾ 정

明亂逆之源委 斥符讖之誑惑 竝及朝家殲魁宥從之意 衛正關邪之旨 盡欲使遐鄉愚迷之類
咸得開曉 以底維新之化也 卿其體此至意 先自營門 聚會校院儒生及坊曲士民 詳細讀諭 仍
又申飭守宰 使各其邑 依此舉行 校院各藏一件讞刻後 土民中 如有願印者 亦爲許印 期於
廣布 雖窮鄉僻壤 傽無一民不知之弊 舉行形止 爲先狀聞事 下諭于諸道監司”

124)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1월 2일 己丑 “趙興鎮 以備邊司言啓曰 湖南綸音 趁今二十日使之遍頒列邑 果已如期印布乎 令廟堂 問于完伯草記事 命下矣謹依傳教 關問該道矣 卽見全羅監司趙時偉牒報 則以爲綸音冊印頒之節 有不容晷刻遲滯 故罔夜入梓 星火印出七千九百四十件 一一頒送形止 今二十日已爲馳啓 而各邑 多有加數請印之報 故九百十二件 又爲印給 計其頒布之數 合爲八千八百五十二件 而列邑各面·各里頒給布諭形止 今方次第報來云矣 敢啓 傳曰 知道”: 이 무렵 전라감영에서 인출한 수량은 『內閣日曆』 10월 25일조에는 7,96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음이 기존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남권희, 2014 앞의 논문, 39면).

125) 『承政院日記』 정조 18년(1794) 10월 11일 乙丑 “上曰(중략) 且聞向日綸音 爲便曉諭諸道臣 方有刊布之舉云 及此發令 使之同頒 亦好故也 履素等曰 聖教至當 及此頒令 無可疑矣”; 이 윤음은 현준 판본 중에서 전라감영 간행본이 확인된다(<부표> 해당 항목 참조).

126) 『正祖實錄』 7년(1783) 9월 7일 乙未, 같은 날의 『承政院日記』에도 廟堂에서 여러 본을 謄出하여, 신속히(星火) 각도에 下送하고 別關을 보내어 道伯을 엄히 신칙하여 坊曲에

조는 각도에 인본 10권씩을 上送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경기를 제외한 5도(경상, 전라, 洪忠, 황해, 함경)에서 인출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번 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¹²⁷⁾

윤음을 신속히 대량 인출할 수 있는 중앙-외방의 간행 협력체계는 효과적인 전달 체계의 작동을 통해서 그 결실을 맺었다. 정조는 관찰사와 수령에게 윤음을 전파할 책임을 부여했고, 이러한 책무가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애썼다. 1797년(정조 21) 歲初에 각읍의 수령에게 頒下한 『향약윤음』은¹²⁸⁾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70여 건이 있는데, 그 중 몇 종의 활자본을 제외한 대부분은 비석에서 얻은 것으로 글씨를 오려 붙이고 첨으로 엮은 ‘拓本’이다. 본문의 말미에는 경상도 각 군현의 지방관들이 ‘謹書’하였음을 밝힌 문구가 들어있는데, 탁본으로 찍은 윤음의 필체가 각기 달리 해당 윤음을 각읍 수령의 친필로 비석에 새겨 세워놓은 뒤 그 결과를 보고하는 용도로 탁본첩을 제작해서 중앙에 제출한 결과물로 추정된다.¹²⁹⁾ 이 윤음은 국가 주도 지방자치제도의 일환으로 관변적인 성격의 향약을 보급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¹³⁰⁾ 수령에게 빼침없이 전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지방민에게도 비석의 형태로 윤음에 담긴 뜻을 길이 각인시키려는 조치로 생각된다. 이 윤음의 반포가 당일의 朝紙에 반포되지 않자, 정조는 ‘무릇 죄는 커도 용서할 만한 것이 있고, 작아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며 문책하기도 했다.¹³¹⁾

알리고 ‘一夫一婦’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정조의 지시가 적혀 있다[『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9월 7일 乙未].

127)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9월 22일 庚戌 “上曰 初七日綸音 慶尙全羅洪忠黃海咸鏡五道頒布後 印本各十件上送事 自廟堂分付”: 현준하는 판본 중에서 경상감영 및 전라감영 간행본이 모두 확인된다(<부표> 해당 항목 참조).

128) 『承政院日記』 정조 21년(1797) 1월 1일 壬寅 “上曰 今當歲初 召見爾等 當以綸音頒下於各邑 其所奉承舉行之道 一依所下綸音爲之之意 爾各歸傳於呂倅 可也”

129) 지방관의 직함과 성명은 <부표> 해당 항목 참조. 대체로 경상도 일대의 지방관을 망라하고 있다.

130) 우홍준, 2006 「독자영역」으로서의 향약의 권위와 국가권위와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40-4; 우홍준 2011 「조선후기 관변자치제도인 ‘수령향약’의 특성」 『한국행정사학지』 29.

131) 『承政院日記』 정조 21년(1797) 1월 3일 甲辰 “上降座乘輿 教益運曰 初一日綸音之不頒於其日朝紙者 承旨事豈可成說乎 凡罪有大而可恕者 小而不可赦者 今番卿等事 實爲駭然

1782년(정조 6)의 『諭京畿大小民人綸音』을 전파하면서 정조는 방백과 수령의 책무를 밝힌 상세한 傳敎를 일일이 내린 것이 주목된다. 경기감사 李亨達가 이 윤음을 가지고 發巡하여 민인을 효유하였는데, ‘한 사람의 백성도 듣고 보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하면서, 윤음을 邑宰[수령]에게 전하고, 읍체는 다시坊曲에 포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祇受한 形止를 장계로 아뢰도록 하여 윤음을 제대로 수령하여 처리했는지도 확인하고자 했다. 정조는 추가로 謳解本의 문안을 더 다행에 전파하도록 하고, 경기 관하의 개별 수령에게도 해당 군현의 실정에 맞추어 작성한 전교를 따로 내릴 정도로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¹³²⁾

이처럼 정조가 關文이나 狀啓와 같은 행정 문서로 윤음의 전파를 확인한 사례는 다수 확인된다. 1783년(정조 7)의 『諭中外大小臣庶綸音』도 ‘綸音祇受狀啓’가 올려졌고,¹³³⁾ 1794년(정조 18) 全羅監司 李書九는 『康津等六邑慰諭蠲恤綸音』과 간인한 책자를 祇受했다는 장계를 올렸다.¹³⁴⁾ 1797년의 『향약윤음』은 内閣(奎章閣)에서 關으로 諸道에 知委하면, 諸道는 祇受한 장계를 모두 摘文院에 올리도록 하였다.¹³⁵⁾ 윤음을 받고 나서 올린 장계의 격식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지방관

矣”

132)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8월 12일丙子 “又命書傳敎曰 此綸音 道臣發巡時齋去 晓諭民人 使一民無不聞不覩 以爲知此意安堵之方 而民之知否 自有考察之道 卿其惕念舉行巡未到或未及到處 卽以綸音 傳之邑宰 使邑宰布告坊曲 祇受形止狀聞事 下諭于京畿監司 李亨達處 又命書傳敎曰 有旨中誤字同異 水原本釐正 而諭本則一件先爲下送 此則巡到時 卿齋往曉諭列邑 則綸音到卽星火頒布 諭本則待下送亦卽傳布事 下諭于京畿監司李亨達處 又命書傳敎曰 卿素嫻諺譯 而院中只有同副所翻譯者 殆不成說 卿於巡到宿站 乘隙必也釐正 遍布列邑 可也 畢釐正後一件 具狀啓謄書上送事”

133)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월 9일辛丑 “以京畿都事李顯默 綸音祇受狀啓 傳于李時秀曰 還下送”

134) 『承政院日記』 정조 18년(1794) 10월 23일丁丑 “李儒慶啓曰 卽見全羅監司李書九康津等六邑慰諭蠲恤綸音及刊印冊子紙[祇]受狀啓 則慰諭使軍官具絳官銜 以宣傳官誤填 原狀啓所當還下送 而係是緊急 雖不得不捧入 其不察之失 不可無警 推考 何如 傳曰 允”

135) 『承政院日記』 정조 21년(1797) 1월 20일辛酉 “李晚秀啓曰 元朝頒下養老務農綸音 自內閣下輸 以內閣關知委諸道 諸道祇受狀啓 皆呈于摘文院 而卽伏見慶尙監司李泰永狀啓 則獨以承政院開坼爲辭 呈于本院 藩臣狀聞 事體不輕 閣院分呈 格例自異 況於莫重綸音祇受有此大段違式 萬萬未安 不可無警 原狀啓還下送 使之改修正 依他道例 呈于摘文院 當該道臣 從重推考 何如 傳曰 允”

을 문책한 일도 있었는데, 『향약윤음』에 대해 경상감사가 올린 장계와 『탕감윤음』에 대해 黃海水使가 올린 장계가¹³⁶⁾ 격식을 어겼다고 하여 從重推考하도록 한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여러 지역에 두루 전파되는 윤음의 경우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표본 조사를 하기도 했다. 1783년(정조 7) 국왕 정조는 비망기를 내려 近日 한 두 음에 ‘抽性摘奸’, 즉 추첨을 하여 조사해 본 결과 9월 22일의 『蠲恤綸音』(『諭京畿民人綸音』으로 추정)을 백성들에게 잘 알리지 않았고 邸里에 잘 반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당초 신칙한 뜻에 맞지 않는다면 문책하였다.¹³⁷⁾ 1783년(정조 7)의 『諭湖南民人等綸音』에서도 백성에게 방백과 수령을 믿을 것을 당부하며, 수령이 백성을 잘 보호하지 못하면 방백을 죄줄 것이며, 방백이 규찰하지 못하면 衣繡의 신하(암행어사)가 있어서 백성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¹³⁸⁾ 이러한 정조의 여러 조치는 외방 관아와 지방관들의 기강을 세워 윤음을 간행 및 보급 체계가 효과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정조대 윤음의 전파와 내용의 실행은 지방관의 역할에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중앙정부가 임시관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예컨대 1794년(정조 18)의 『諭湖西士民庶綸音』은 湖西慰諭使가 慰諭의 책무를 수행하면서 각 읍에 내려보낸 것이 확인된다.¹³⁹⁾ 또한 정조는 윤음을 접한 백성의 반응이나 태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782년(정조 6) 개성유수 鄭昌順은 윤음(『諭京畿大小民人綸音』으로 추정)이 頒下된 이후 愚夫愚婦도 감읍하지 않음이 없었고 유리하고자 하던 자들도 安堵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136) 『承政院日記』 정조 8년(1784) 8월 12일 乙未 “以黃海水使 各道身軍布折半蕩減綸音 祇受狀啓 傳于徐龍輔曰 狀啓有違格 該水使 從重推考 更爲修正上送事 分付”

137)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10월 11일 己巳 “備忘記 傳于朴祐源曰 近因一二邑抽性摘奸聞之 去月二十二日 蘫恤綸音 尚多不知之民人 亦有不頒之邸里 是豈當初申飭之意 所蠲所恤者 不識爲何事 則吏何以不集奸 民何以蒙實患 該邑守令 非不欲先施決報 從後重勘而災歲迎送 反爲民弊 嘗罪姑且參酌 姓名亦不提教 以此意 更加星火嚴飭列邑”

138) 『正祖實錄』 7년(1783) 10월 8일 丙寅.

139) 『承政院日記』 정조 18년(1794) 11월 7일 辛卯 “湖西慰諭使洪大協啓曰 臣於本月初四日 祇伏承湖西四十四邑一鎮慰諭之命 (중략) 以此下諭 添書於印本下方 下送分給稍實邑敎是置 又下公州等稍實十邑綸音冊子二十卷 本月初六日臣在振威縣 並爲祇受是自臥乎所”

는데, 주관적 판단에 그친 보고라는 느낌은 있으나 민심의 수습에 있어서 윤음의 역할이 컸음을 알 수 있다.¹⁴⁰⁾

정조는 널리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신속성이 지켜지는지도 유의하였다. 정조는 1783년(정조 7) 9월 7일 『육도윤음』을 내리면서,¹⁴¹⁾ 경기도에는 그 달 안으로 윤음이 전파되도록 경기 감사를 신칙하였고, 다른 도는 月內에 하기는 어렵더라도 신속히 知委(명령을 내려 알림)하도록 하였다.¹⁴²⁾ 실제 9월 30일에는 原春監營에서 인출한 윤음이 올라온 것이 확인된다.¹⁴³⁾ 이처럼 신속한 전파에 있어서도 중앙-외방의 협력체계가 유효하게 활용되었다.

윤음의 내용상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添刊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 배포하는 것도 가능했다. 1784년(정조 8) 『탕감윤음』의 경우 ‘御廳騎士保布, 別破陣保布 합 70餘同과 禁營別破陣保布 10餘同’ 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수효에 差誤가 있는 것을 모두 補遺하여 添刊 반포하여 혼란을 막기도 하였다.¹⁴⁴⁾ 반포 과정에 대한 정조의 관심과 함께, 관판 인쇄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여러 변수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는 윤음을 전국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중앙과 외방의 간행 협력체계를 충분히 활용하였고, 간행 및 배포 과정에 적극적으로

140) 『承政院日記』 정조 6년(1782) 8월 26일 庚寅 “上曰 緿音後 畿內民人 或有實惠耶 尚集曰 果然矣 當初或有離散之意 而得見緿音之後 舉皆安堵 亦有感泣者云矣”

141)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9월 7일 乙未.

142)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9월 25일 癸丑 “又命書傳教曰 日前所下緿音 今月內必須 無遺謄布坊曲 來月初當發備郎 遍審勤慢 以此意令廟堂嚴飭畿伯處 他道則今月內雖難 盡頒 亦須星火知委 俾無從後現發論罪之弊事 一體嚴飭”

143) 『承政院日記』 정조 7년(1783) 9월 30일 戊午 “上命豐之曰 原春監營印上緿音 卽爲入之事 分付備局”

144) 『承政院日記』 정조 8년(1784) 8월 14일 丁酉 “有隣曰 向來減布緿音之刊頒八路 寔出於 考其數爻 無所相左之德意 而卽聞御將禁將之言 則御廳騎士保布 別破陣保布 合七十餘同 禁營別破陣保布十餘同 謄書之際 忘未入錄 緿音頒布後 始爲覺得 發關諸道 依他名色例 一體蠲減 而當初落漏之罪 實無所逃云矣 此事臣旣承命照管 則不察之失 誠不勝惶恐 而兩營之不善句檢 致有落漏者 殊極未安 今則冊子旣已頒布 洗補無路 姑待各道道以上成冊報來 如有數爻差誤者 一體補遺 添刊頒布 則庶幾無混徵之歎 而亦以此意 自備局 先爲知委 於諸道 何如 上曰 依爲之 文書 申飭各道 斯速修正上送 以爲添印頒布之地”

관여하고 사후적으로도 제대로 전파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민인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했다. 윤음의 진행을 위해 정조가 활용한 수단들, 즉 활자 및 목판 인쇄술, 중앙과 외방 관청의 협업, 기존 간행본의 번각, 한문과 한글의 竝用 등은 여타의 국가간행물을 지방에 보급할 때도 활용되어 오던 것들이 라서 인쇄 기술이나 방법론적 차원에서 현저히 새로운 요소가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조의 윤음은 민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국왕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추진된 국가적 사업이었다. 단순히 지식이나 윤리의 보급을 위해 서적을 보급하는 수준을 넘어, 국정 운영이나 민생에 관한 현안을 홍보하고 민인의 공감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런 까닭에 일반적인 서적과 달리 신속하게 대량의 서적을 인출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배포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또 장기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서적을 보급하게 마련인 經典類와 달리, 매우 時宜性이 강한 새로운 글이었기에 기성의 판목을 활용할 여지도 없었다. 앞서 잘못 전파된 윤음의 내용을 급히 고쳐 간행한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듯, 적어도 수십 년에서 몇 세기에 걸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텍스트를 전승·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부분의 학술서들보다 훨씬 유통의 호흡이 짧았던 셈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정조는 기존의 중앙-외방 협업체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부심해야 했다. 정조의 노력으로 간행본 윤음이란 매체를 통해서 국왕과 백성 사이에 정보의 소통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조는 전통적으로 被治의 대상일 뿐이었던 민인의 동의와 공감에 기반을 두고 국정을 펼치는 새로운 君主像을 보여줄 수 있었다.

18세기까지 구축된 관영 인쇄술의 수준과 운영 시스템은, 정조가 윤음을 바탕으로 대민 소통의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한 필요조건 중 하나였다. 정조가 윤음의 신속하면서도 광범위한 전파를 실현시키고자, 각지에 흩어진 대량의 인쇄 역량을 일사불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구축된 인출 체계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윤음이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반응은 어땠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한 정조의 조치는, 책판목록을 정리하여 외방의 인쇄역량 수준과 활용가능성을 늘 파악하고 관리해오던 전통이 더욱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조가 새로운 왕정을 위해 인쇄술과 서적 보급 체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비록 국왕과 관청이 주도한다는 한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관판 인쇄가 18세기 조선 사회에서 多衆을 위한 정보전달의 매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맷음말

본고는 조선후기 중앙정부와 지방관아가 연계된 관판 인쇄의 협력 체계가 어떻게 작동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정조가 윤음의 간행과 배포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민인에게 전파하여 소통을 시도했는지 알아보았다. 정조의 윤음은 지역적·신분적으로 광범위한 독자들과 소통할 것을 목표로 하였기에 전통적인 중앙-외방의 간행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18세기 중앙 관서와 외방 관아의 협력체계는 이미 조선전기부터 유래하였던 것으로 중앙정부는 외방의 관원에게 현지 책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기면서 중앙의 필요에 따라 인력과 물자를 활용하여 간행 작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누판고』를 비롯하여 지방 각지에 소재한 책판의 종합 목록이 이미 작성되고 있었으며, 중앙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외방의 인쇄 역량을 활용하기도 하고, 중앙에서 외방에 지식이나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외방에 인쇄를 맡기기도 하였다.

중앙 정부는 주로 간행할 책자의 편집과正書와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외방은 판각 작업을 맡아 간행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중앙과 분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 감영은 중앙과 예하 군현 및 민인을 연결해 주는 서적 간행의 거점 역할을 했다. 중앙 정부는 신속한 소량 인출에 적합한 활자와 장기간 다량 인출이 가능한 목판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간행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였고, 외방 관아는 중앙의 간행물을 신속히 예하 군현과 민인에 전파하기 위해 기성의 인쇄본을 다시 목판에 새기는 雕刻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정조는 저술의 내용이나 보급의 대상에 따라서 중앙과 외방의 간행 협력 체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부심했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級音은 국왕이 직접 편찬과 頒賜 과정에 관여하였기에 관련된 논의 내용이 상세히 전한다. 정조의 윤음은 하층민을 대상으로 한 단독 저술의 형태로 간행되어 지방민에게 폭넓게 보급되었다. 주로 흥년시의 구휼이나 조세의 감면 등 민인의 삶과 밀접한 내용이 많았다. 또한 단순히 민인을 위로하는 수준의 修辭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 계획까지 事目 등의 형태로 첨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조가 추구한 적극적인 왕정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정조는 이러한 윤음이 전국적으로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대부분의 윤음에 診解를 붙여 하층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했고, 중앙과 외방의 간행 협력체계를 사안에 따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배포 수량에 따라 주로 중앙에서 활자로 1차 인출하여 이를 지방에 下送하기도 하고, 전국적인 범위로 배포해야 할 때에는 지방 관아에서 중앙의 活印本을 번각하여 재차 인출하였다. 그리고 군현에서 면리 및 개별 민인에게 전파할 때는 인쇄본을 베껴내는 방식이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적 배포를 위해서는 지방 관아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교서관·규장각 등 중앙 관서에서 인출하여 배포할 경우 200~400여 건 정도가 일반적이었고 많이 찍을 경우 600~700건 정도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수량은 1~2개 道에 배포하는 분량에 지나지 않았다. 번각을 활용하는 외방 감영의 경우 집중적으로 작업을 할 경우 한 곳(전라감영)에서 8,000~9,000건을 찍어낸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윤음을 전파할 때는 대규모 인쇄 역량을 갖춘 여러 감영을 동시다발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정조는 신속한 전파에 유의하면서도 내용상 틀린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정 내용을 添刊하도록 하는 등 정확한 정보의 전달에도 힘썼다.

윤음을 신속히 대량 인출할 수 있는 중앙-외방의 간행 협력체계는 효과적인

전달 체계의 작동을 통해서 그 결실을 맺었다. 정조는 전달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백과 수령 등 지방관의 기강을 세우고 전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윤음에 대한 민인의 반응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정조가 지방관에 대한 신칙에 역점을 기울인 것은 중앙에서 인출과 배포를 총지휘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민인과 접촉하여 배포의 책임을 맡는 지방 관아의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18세기 국왕 저술의 간행·배포 과정을 통해서 신하와 백성에게 동의와 공감을 구하고자 하는 통치 방식이 정조가 주도한 왕정의 특색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언해와 대량 인쇄를 활용한 대민 소통이 필요했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그 한 가지 단서로서 조선후기 지방사족의 신분적 권위를 토대로 성립한 독자적 향약이 쇠퇴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왕권 측에서 지방수령이 주도하는 향약의 복구가 시도된 것을 들 수 있다. 정조는 1797년(정조 21) 『鄉禮合編』을 편찬하고 『향약윤음』을 반포한 데서도 드러나듯, 官權 중심의 향약을 보급하여 지방사회를 안정시키고자 시도하고 있었다.¹⁴⁵⁾ 당시의 국왕과 중앙정부는 지방 민인의 교화와 그들의 생활 안정을 더 이상 士族의 역할에만 기댈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왕과 중앙정부는 지방민과의 직접 소통과 그들의 疾苦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대응을 해낼 것을 요구받고 있었다. 정조가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民弊까지도 上言·擊錚할 수 있도록 한 것도¹⁴⁶⁾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조의 윤음은 민인의 보호라는 국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시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고, 이는 당시의 관영 인쇄술과 작업 거점, 그리고 이들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에 힘입어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부표>에서 나타나듯이 19세기 이후 국왕들은 이러한 전통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다. 후왕들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반포된 윤음은 1839년(헌종 5)과 1881년(고종 18)에 반포된 두 차례의 斥邪論音이 사실상 전부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천주교 금압에 따른 사상 통제를 위한 것으로 정조의 윤음이 주로 추구

145) 우홍준, 2006 앞의 논문; 2011 앞의 논문 참조.

146) 한상권, 2000 「정조대 사회문제와 民訴의 활성화」 『18세기연구』 3.

한 민생 안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는 18세기와 19세기 王政의 성격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관영 인쇄술이 갖는 對社會的 역할의 한계를 시사하는 현상으로 주목된다.

주제어 : 縱音, 活字, 木板, 雕刻, 諺解

투고일(2018. 8. 16), 심사시작일(2018. 8. 17), 심사완료일(2018. 9. 11)

〈Abstract〉

Printing of King Chōngjo's *Yunǔm* and the Distribution to the People

Kwon Kiseok *

This is a study on how Chōngjo's *yunǔm*(諭音, king's message) was effectively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the people based on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 the late Chosōn period. The cooperation system of the central and foreign government offices in the 18th century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since the early Chosōn period. The central government entrusted local officials with the management of the printing woodblocks in their workplace and proceeded with book publishing by using local manpower and materials. To effectively utilize this central-local cooperation system, a comprehensive list of woodblocks around the country was compiled, and printing capacities from all over the country were utilized to meet central demand or to spread knowledge to local areas.

Movable metal types were suitable for rapid low-volume printing, whereas woodblocks enabled long-term high-volume printing. The central government chose the printing metho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the book to be published consider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two printing means. Local authorities tried to reprint the central publications and quickly distribute them to subordinate county and local residents.

King Chōngjo published and distributed the king's message, *yunǔm* to the common people in the form of a booklet. He used this messages to proactively promote national policies such as saving the hungry people by famine and reducing taxes. In order for the his messages to be transmitted quickly nationwide, he made effective use of the cooperation system of central and local publishing, and translated them into Hangeul so that the lower classes could read it easily. In many cases, the first edition of *yunǔm*

*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printed in metal types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n the provincial government reprinted the central government's editions, using woodblocks. Finally, each county received the books printed in the provincial office and copied it to the people of each village or read it verbally.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was especially great for the nationwide distribution of *yunǔm*. The central government office, such as Kyosǒgwan(校書館) and Kyujanggak (奎章閣), had only printed hundreds of copies at most. However, when local authorities were working together at the same time, it was possible to print more than a thousand copies quickly. King Chǒngjo always tried to confirm that *yunǔm* was released without any troubles, and he also paid attention to the reaction of the people who read it. He pursued an aggressive method of governance, seeking consent and empathy with bureaucrats and people through the distribution and publishing of *yunǔm*, which could then be carried out by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government-led printing system at that time.

Key Words : *yunǔm* (綸音, king's message), movable metal type, printing woodblock, *pǒngak* (翻刻, reprinting), *ǒnhae* (諺解, Hangeul translation)

〈부표〉 역대 綸音 목록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참조 : <https://www.nl.go.kr/korcis/>

朴正圭, 1993 「朝鮮時代 教書 綸音에 관한 研究」『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 한국언론학회

백두현, 2009 「훈민정음을 활용한 조선시대의 인민 통치」『震擅學報』108, 震擅學會

김백철, 2011 「英祖의 綸音과 王政傳統 만들기」『藏書閣』26, 한국학중앙연구원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자(참고문헌)
戒酒綸音	1514년(중종 11)	*목판본			박정규(1993)
襞성의계 니르는 글이라	1593년(선조 26)				백두현(2009)
諭濟州等三邑父老人民等書	1675년(숙종 1)				박정규(1993)
諭濟州旌義大靜耆老軍民 閑良人等書	1716년(숙종 42)				박정규(1993)
御製大訓 (戊申討逆綸音)	1741년(영조 17)	*필사본			박정규(1993) 김백철(2011)
御製守城綸音	1751년(영조 26)	*목판본	*오대산사고, 적상산사고 등에 내린 内賜記 있음	*언해 없음	박정규(1993) 김백철(2011)
御製命讀國朝寶鑑綸音	1756년(영조 32)	*필사본			김백철(2011)
御製勸農求農書綸音	1757년(영조 33)	*미확인			박정규(1993)
御製戒酒綸音	1757년(영조 33)	*목판본	*다른 표제: 어제계쥬륜음 *刊記: 丁丑十一月日 芸閣藏板(교서관 간행) *卷末附記: 令芸館木板刊印 藏于五處史閣 京而政院玉堂翰苑春坊政府六曹京兆柏府徽垣 外而八道三府分藏 而板本藏芸閣 丁丑十一月初五日所下傳敎(사고, 중앙관서, 외방의 8도3부에 배포)	*諺解 있음	김백철(2011) 박정규(1993) 백두현(2009)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御製科弊釐正綸音	1759년(영조 35)	*금속활자본 (무신자)		*언해 없음	김백철(2011)
諭金吾秋曹兩司綸音	1759년(영조 35)	*목판본		*언해 없음	박정규(1993) 김백철(2011)
御製至日綸音	1764년(영조 40)	*미확인			박정규(1993) 김백철(2011)
甲申冬享香祇迎後諭享官執事綸音	1764년(영조 40)	*필사본			김백철(2011)
御製望八親政勉飭兩銓綸音	1764년(영조 40)	*필사본			김백철(2011)
勉飭羣工綸音	1765년(영조 41)	*필사본			김백철(2011)
御製至日綸音	1767년(영조 43)	*필사본			김백철(2011)
諭玉書綸音	1768년(영조 44)	*필사본			김백철(2011)
御製己丑暮春既望綸音	1769년(영조 45)	*필사본			김백철(2011)
御製飭雲觀綸音	1769년(영조 45)	*필사본			김백철(2011)
御製追慕綸音	1770년(영조 46)	*필사본			김백철(2011)
御製慷慨綸音	1772년(영조 48)	*필사본			박정규(1993) 김백철(2011)
宗簿寺懸板綸音	1772년(영조 48)	*拓本			김백철(2011)
御製禁獮鹿綸音	1773년(영조 49)	*필사본			박정규(1993) 김백철(2011)
御製宣諭兩都八道綸音	1773년(영조 49)	*필사본			김백철(2011)
御製諭大小臣僚綸音	1773년(영조 49)	*필사본			김백철(2011)
御製洞諭大小群工綸音	1774년(영조 50)	*필사본			김백철(2011)
御製綸音	1776년(정조 즉위)	*금속활자본	*다른 표제: 御製討逆洞諭, 丙申綸音	*정조 즉위 후 흥	박정규(1993)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임진자)	*刊記: 丙申(1776)七月 茲閣活印(교서관 간행) *副司直, 吏曹, 司諫院 大司諫 등 관청과 관원에게 내린 내사기 있음	인한 등을 성토하는 윤음	
曉諭綸音	1777년(정조 1)	*목활자본 (한글목활자)		*언해 있음 *위조윤음을 반박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윤음	박정규(1993) 백두현(2009)
어례눈음(御製綸音)	1777년(정조 1)			*언해 있음 *『明義錄診解』 수록 윤음	백두현(2009)
御製諭濟洲大靜旌義等呂父老民人書	1781년(정조 5)	목판본	*다른 표제: 어례눈음(御製綸音), 어제체쥬대녕정의등 고을부로와 민인등의게 하유호시는글이라	*언해 있음	박정규(1993) 백두현(2009)
下京兆綸音	1781년(정조 5)	拓本		*언해 없음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	1782년(정조 6)	*금속활자본 (정유자, 임진자)	*다른 표제: 諭大小民人綸音, 경과대소민인등의게 하유호시는 룬음 *간기 : 乾隆四十七年八月十二日	*언해 있음 *미국 컬럼비아대학 도서관본은 『諭海西綸音』(1782) 합본	백두현(2009)
諭入庭宗親文武百官綸音	1782년(정조 6)	*금속활자본(정유자, 임진자)	*刊記 : 乾隆四十七年十一月二十七日 *봉조하, 부사직, 사헌부 장령, 홍문관 부수찬, 황해감사 황경원 등에게 내린 内賜記 있음	*언해 없음	
諭中外大小臣庶綸音	1782년(정조 6)	금속활자본(임진자, 정유자), 목판본	*다른 표제: 癸卯綸音, 유동외대소신서를음, 諭中外臣庶綸音, 御製綸音 *한중연본(B11B 14)은 連山縣에 내린 内賜記 있음: '內賜連山縣' *고려대학교 도서관본(경화당B9-A12B)은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刊記 있음: '乾隆四十七年 嶺營開刊'	*언해 있음 *규장각본 등은 『崇儒重道綸音』(1783) 첨부	박정규(1993) 백두현(2009)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영남대 도서관본은 안동부에 내린 内賜記 있음: ‘安東府’ *副司直, 우의정, 奉常正, 훈련주부, 호조좌랑 등 에게 내린 内賜記 있음		
諭海西綸音	1782년(정조 6)	*금속활자본 (임진자)	*刊記: 乾隆四十七年 八月十四日	*언해 없음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	1782년(정조 6)	*활자본(임진자)	*다른 표제: 유호서대쇼민인등률음	*언해 있음	
綸音 (합본)	1782년(정조 6) 이후	*필사본, 금속활자본 (임진자, 정유자), 목판본	*刊記 : 丙申七月 芸閣活印(교서관 간행) *포함된 윤음 : 御製綸音(1776), 御製諭濟州大靜 旌義等邑父老民人書(1781),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 (1782)		
綸音 (합본)	1782년(정조 6) 이후	*필사본	*포함된 윤음 : 討逆洞諭(1776), 科制變通綸音 (1776), 御製討逆洞諭(1776), 歲首綸音(1777), 諭 設賑諸道綸音(1777), 因旱災言綸音(1777), 刑具釐 正綸音(1777), 檢製釐正綸音(1777), 歲首綸音(1778), 禪月不用樂綸音(1778), 饋諭樂院綸音(1778), 朝參 日綸音(1778), 歲首綸音(1779), 諭廣洲利川驪州士 民父老綸音(1779), 北關勸農綸音(1781), 觀刈日綸 音(1781), 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1781), 諭嶺南被災民人綸音(1781), 諭入江民人綸音(1781), 西北武臣官方變通綸音(1781), 歲首綸音(1782), 告 變人尹得成下送本道申告章甫綸音(1782)		
綸音	1783년(정조 7)	*금속활자본 (정유자)			
綸音	1783년(정조 7)	*활자본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御製綸音	1783년(정조 7)	*목활자본	*刊記: 乾隆四十八年 十月二十		
崇儒重道綸音	1783년(정조 7)	*托印本		*언해 없음	박정규(1993)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土民綸音	1783년(정조 7)	*금속활자본(임진자, 정유자로 파악하기도 함)	*다른 표제: 어례유원춘도녕동녕서대쇼스민륜음, 關東綸音 *前郡守, 승정원 주서 등에게 내린 내사기 있음	*언해 있음	백두현(2009)
御製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土民綸音	1783년(정조 7)	*금속활자본(임진자, 정유자로 파악하기도 함) *목판본도 있음(규장각 소장奎11170)	*다른 표제: 어례유함경도남관북관대쇼스민륜음	*언해 있음	백두현(2009) 박정규(1993)
諭京畿民人綸音	1783년(정조 7)	*금속활자본(임진자) *목판본	*다른 표제: 유경민인륜음 *刊記(文末): 乾隆四十八年 九月二十二日	*언해 있음	백두현(2009)
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	1783년(정조 7)	*금속활자본(임진자, 정유자로 파악하기도 함)	*다른 표제: 유경기홍충도감수령등륜음 *刊記: 乾隆四十八年 正月初九日辛丑	*언해 있음	백두현(2009)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	1783년(정조 7)	*목판본	*다른 표제: 유경기홍충전나경상원춘함경녹도륜음 *刊記: 乾隆四十八年 九月初七日 *하버드대학엔칭도서관 소장본(TK4212-4213)은 嶺營 간행으로 파악되어 있고 『字恤典則』이 첨부 되어 있음(刊記: 癸卯活印 中外藏板)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육당B9-A19)은 全州監營 간행본으로 파악, 『諭湖南民人等綸音』(1783)이 첨부됨	*언해 있음	백두현(2009)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	1783년(정조 7)	*금속활자본(임진자, 정유자로 보기도 함)	*刊記: 乾隆四十八年 正月十六日	*언해 있음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諭湖南民人等綸音	1783년(정조 7)	*금속활자본 (정유자) *목판본	*識: 乾隆四十八年 十月初八日 *고려대 도서관 소장본(경화당B9-A41B, B9-A41A) 규장각 소장본(奎2079~2081) 등 목판본은 全羅監營에서 간행, 刊記: '全羅監營 開刊' *吏官에게 내린 내사기 있음 *규장각 소장본(가람古 349.1-J466yh) 중에는 '求禮縣' 藏書記 있음 *미국 UC버클리대학 도서관 소장본(4591.49.4013) 은 『유경기홍충전라경상원춘함경육도윤음』(1783), 『자흘전칙』(1783)이 합본되어 있음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본(B11B-0012)는 정유자 변각본으로 파악됨	*언해 있음	박정규(1993)
字恤典則	1783년(정조 7)	*활자본(정유자) 또는 목판본	*다른 표제: 조흘면축 *刊記: '癸卯活印 中外藏板' *伊川府에 내린 内賜記(일본 東京大學 小倉文庫 本 L175207), 价川郡守에게 내린 内賜記(미국 UC 버클리대 도서관본) 있음 *字恤典則綸音과 字恤典則事目으로 구성됨	*언해 있음	박정규(1993) 백두현(2009)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 金載人書	1783년(정조 7)	*목판본	*다른 표제: 유경양도소겸독운어스김재인서 *刊記: 嶺營開板(경상감영 간행)	*언해 있음	백두현(2009)
御製綸音 (합본 추정)	1783년(정조 7)	필사본, 목판본, 금속 활자본(정유자) 등	*卷末: 乾隆四十八年 十月二十		
綸音 (합본)	1783년(정조 7) 이후	*활자본(임진자)	*포함된 윤음: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1782), 諭湖 西大小民人等綸音(1782), 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 綸音(1783),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1783)	*언해 있음	
綸音 (합본)	1783년(정조 7) 이후	*금속활자본(정유 자), 목판본	*포함된 윤음: 諭洪忠道人士綸音, 以旱災責躬求言 綸音, 推鞠停罷後諭廷臣綸音, 諭海西綸音(1782),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1782), 諭入庭宗親文武百官綸音, 世室議定元子定號後鑄惠綸音, 諭中外大小臣庶綸音(1782), 崇儒重道綸音(1783), 歲首綸音(1783 추정), 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1783),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1783),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1783), 諭京畿民人綸音(1783), 諭湖南民人等綸音(1783),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1783)		
綸音 (합본)	1783년(정조 7) 이후	*금속활자본(정유자), 목판본	*포함된 윤음: 諭湖南民人等綸音(1783),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1783),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1783), 御製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1783)		
綸音 (합본)	1783년(정조 7) 이후	*금속활자본(정유자), 목판본	*포함된 윤음: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1783), 諭京畿民人綸音(1783),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1783), 御製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1783), 御製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1783)		
綸音 (합본)	1783년(정조 7) 이후	*금속활자본(정유자), 목판본	*포함된 윤음: 御製討逆(1776), 諭濟州大靜於義等邑父老民人書(1781), 諭入庭宗親文武百官綸音(1782), 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1783),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1783),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1783),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1783), 御製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1783)		
綸音 (합본)	1783년(정조 7) 이후	*금속활자본(정유자), 목판본	*포함된 윤음: 御製討逆洞諭(1776), 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1781), 諭入庭宗親文武百官綸音(1782),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1782), 諭海西綸音(1782),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1782), 諭中外大小		

서명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臣庶綸音(1782), 崇儒重道綸音(1782), 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1783),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1783),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1783), 諭京畿民人綸音(1783)		
綸音 (합본)	1783년(정조 7) 이후	*금속활자본(정유자), 목판본	*포함된 윤음 : 諭入庭宗親文武百官綸音(1782), 御製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1781),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1782),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1782), 諭中外大小臣庶綸音(1782), 崇儒重道綸音(1783), 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1783),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1783),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1783), 諭湖南民人等綸音(1783),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1783)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身軍布折半瀉減綸音	1784년(정조 8)	*금속활자본(정유자, 임진자로 보는 경우 있음) *목판본	*다른 표제: 어폐왕세조칙내후각도신군포결반탕 감륜음, 宣惠綸音, 御製施惠綸音 *各道身軍布舊還蕩減擗數後錄 포함 *嶺營(경상감영)에서 간행된 목판본 있음(규장각 소장 古 4253-5) *목판본(고려대 도서관본 만송B9-A66, 국립중앙 도서관 b16022-36, 계명대 동산도서관 951.091- 정조○) 간기: 嶺營開板(경상감영 간행) *성균관대 준경각본은 錦營(충청감영) 간행	*언해 있음	백두현(2009) 박정규(1993)
御製賜畿湖別賑資綸音	1784년(정조 8)	*금속활자본 (임진자)	*다른 표제: 어폐스괴호별진조륜음	*언해 있음	백두현(2009) 박정규(1993)
御製諭大小臣僚綸音	1784년(정조 8)	*금속활자본(정유자 또는 임진자) *목판본	*表題: 賦燕綸音 *刊記: 乾隆四十九年 七月初七日 *부사직, 우의정, 규장각 각각에게 내린 내사기 있음	*언해 없음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綸音諺解	1784년(정조 8)	목판본, 목활자본	*刊記 : 甲辰十二月日 全羅監營刊	*언해 있음	
御製諭濟州民人綸音	1784년(정조 8)	*목판본	*다른 표제: 어제유제쥬민인눈음 *刊記 : 甲辰十二月日 全羅監營刊(전라감영 간행) *규장각 소장본(奎 11369)에는 『御製飭諭武臣綸音』 첨부	*언해 있음	
褒忠綸音	1784년(정조 8)	*금속활자본(정유자 또는 임진자)	*다른 표제: 御製諭朝參日入庭百官綸音('포충윤음', 의 일부) *綸音末: 乾隆四十九年 八月二十九日	*언해 없음 *목차 구성: 褒忠綸音, 御製諭朝參日入庭百官綸音, 御製致祭文, 御製詩, 諸臣謝上箋	
曉諭綸音	1784년(정조 8)	*금속활자본(정유자)	*刊記 : 癸卯活印 中外藏板 (합본된 『자흘전칙』의 간기로 생각됨) *獻陵令 安鼎福에게 내린 내사기 있음 *『자흘전칙』(1783), 『어제왕세자책례후각도신군포절반탕감윤음』(1784)가 첨부되어 있음	*언해 있음	
綸音諺解 (합본)	1784년(정조 8) 이후	*금속활자본(임진자)	*포함된 윤음 : 御製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1781),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1782),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1782), 諭中外大小臣庶綸音(1782), 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1783),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1783),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1783), 諭京畿民人綸音(1783), 諭湖南民人等綸音(1783),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土民綸音(1783), 御製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土民綸音(1783),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身軍布折半蕩減綸音(1784)		
綸音 (합본)	1784년(정조 7)	*금속활자본	*포함된 윤음: 御製諭原春道嶺西大小土民綸音(1783),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이후	(정유자)	御製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1783), 御製賜畿湖別賑資綸音(1784), 字恤典則(1783)		
綸音(합본)	1784년(정조 8) 이후	*금속활자본 (정유자), 목판본	*포함된 윤음: 御製諭大小臣僚綸音(1784),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身軍布折半蕩減綸音(1784) 褒忠綸音(1784)		
綸音(합본)	1784년(정조 8) 이후	*금속활자본(정유자), 목판본(混入覆刻)	*포함된 윤음: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1783), 御製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1783), 字恤典則(1783), 御製賜畿湖別賑資綸音(1784), 御製諭大小臣僚綸音(1784),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身軍布折半蕩減綸音(1784), 御製諭朝參日入庭百官綸音(1784)		
綸音(합본)	1784년(정조 8) 이후	*금속활자본(정유자), 목판본	*포함된 윤음: 御製賜畿湖別賑資綸音(1784), 御製諭大小臣僚綸音(1784),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身軍布折半蕩減綸音(1784), 褒忠綸音(1784), 御製諭朝參日入庭百官綸音(1784), 御製諭濟州民人綸音(1784)		
綸音(합본)	1784년(정조 8) 이후	*금속활자본 (정유자), 목판본	*刊記 :癸卯活印 中外藏版 *포함된 윤음: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1783), 御製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1783), 歲首綸音, 甲辰御製賜畿湖別賑資綸音(1784), 英宗大王貞聖王后追上尊號王大妃殿加上尊號收議綸音, 甲辰御製諭大小臣僚綸音(1784),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身軍布折半蕩減綸音(1784)		
綸音諺解(합본)	1784년(정조 8) 이후	*목활자본	*포함된 윤음: 諺京畿大小民人綸音(1782), 諺湖西大小民人等綸音(1782), 諺中外大小臣庶綸音(1782), 諺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1783), 諺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1783), 諺京畿民人綸音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1783), 諭湖南民人等綸音(1783), 御製諭咸鏡道南北關大小民人綸音(1783),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身軍布折半蕩減綸音(1784)		
御製飭諭武臣綸音	1785년(정조 9)	*금속활자본 (임진자)	*규장각 및 각 史庫에 내린 내사기가 있음	*언해 없음	박정규(1993)
綸音 (합본)	1785년(정조 9) 이후	*금속활자본 (정유자) 목판본	*포함된 윤음: 御製賜畿湖別賑資綸音(1784), 御製諭大小臣僚綸音(1784),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身軍布折半蕩減綸音(1784), 褒忠綸音(1784), 御製諭朝參日入庭百官綸音(1784), 御製諭濟州民人綸音(1784), 御製飭諭武臣綸音(1785)		
綸音 (합본)	1785년(정조 9) 이후	*금속활자본 (정유자)	*포함된 윤음: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1782), 諭入庭宗親文武百官綸音(1782), 御製賜畿湖別賑資綸音(1784), 御製飭諭武臣綸音(1785)		
綸音	1787년(정조 11)	*금속활자본(정유자), 목판 혼입	*'禁紋事目' 내용이 들어 있음		
御製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綸音	1788년(정조 12)	*금속활자본 (정유자)	*다른 표제: 北道蠲減綸音, 어대함경도남북관대소민인등의개위유호시논률음 *安邊府使에게 내린 내사기 있음	*언해 있음	백두현(2009)
御製表忠綸音	1788년(정조 12)	*금속활자본(정유자, 임진자)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등 史庫, 승정원 좌승지, 우부승지, 故參議 柳升鉉家, 幼學李樂鉉 등에게 내린 내사기 있음 *규장각본 및 한중연본(K2-1900) 등은 『御製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綸音』이 첨부되어 있음 *한중연본(K2-1959)은 『御製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綸音』, 『加髢申禁事目』이 합본되어 있고, K2-1960은 『御製勤農政求農書綸音』도 첨부되어 있음	*언해 있음 *수록 내용: 御製表忠綸音, 御製賜祭文, 御製詩, 諸臣謝上箋 諸道啓聞褒賞人	박정규(1993)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加鼈申禁事目	1788년(정조 22)	*금속활자본(정유자) 또는 목판본	*다른 표제: 가데신금스목, 禁鼈事目 *殷栗縣(규장각본 가람古 349.1-G115)과 高原郡(한국은행 규장각 위탁도서 한은 125)에 내린 內賜記 있음	*언해 있음	백두현(2009)
綸音(합본)	1788년(정조 12) 이후	*금속활자본 (정유자)	*포함된 윤음: 御製表忠綸音(1788), 御製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綸音(1788), 義僧番錢減半給代事目(1785)		
綸音(합본)	1788년(정조 12) 이후	*금속활자본 (정유자)	*포함된 윤음: 因右相蔡濟恭事洞諴綸音, 御製表忠綸音(1788), 御製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綸音(1788), 諴水原民綸音		1) 인우상채제공 사통유윤음(미 확인) 2) 어제표충윤음 (1788) 3) 어제유함경남 북관대소민인등 윤음(1788) 4) 유수원민윤음 (미확인)
御製諭楊州抱川父老民人 等書	1792년(정조 16)		*다른 표제: 諭楊州抱川綸音, 어제유양주포천부로 민인등서	*언해 있음	박정규(1993) 백두현(2009)
綸音	1794년(정조 18)	*금속활자본 (정유자)			
諭諸道臣綸音	1794년(정조 18)	*목판본	*다른 표제 : 聖節綸音, 諭諸道綸音 *한중연 소장본(K2-1911)에는 '慶尙道觀察使之印' 있음 *개명대 동산도서관본(951-정조○)은 간행지가 全羅監營으로 되어 있음. 일본 小倉文庫本은 '完營'刊印'刊記가 있고, 『諭諭湖南六邑民人綸音』이	*언해 있음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p>합본되어 있음 규장각 소장본(奎2221 등)도 '完營 刊印' 刊記 있음</p> <p>*미국 컬럼비아대학 도서관본은 卷末에 '乾隆五十九年九月二十二日……茲用付梓而印出頒諸州縣'이라 기재</p> <p>*성균관대 준경각본(B11B 7)은 全羅道康津海南長興興陽靈巖珍島等邑民人慰諭蠲恤綸音(1794), 慰諭湖南六邑民人綸音이 합본되어 있음</p>		
諭湖西士夫民庶綸音	1794년(정조 18)	*금속활자본(정유 자 또는 임진자)	印 : 奎章之寶	*언해 없음	박정규(1993)
諭華城城役董工諸臣綸音	1794년(정조 18)	*금속활자본 (임진자)		*언해 없음	
慰諭湖南六邑民人綸音	1794년(정조 18)	*금속활자본 (임진자) *목판본	<p>*규장각 소장본 중奎1962의3은 금속활자본 (임진자)</p> <p>*다른 표제: 유녹읍민인등륜음, 全羅道康津海南長興興陽靈巖珍島等邑民人慰諭蠲恤綸音</p>	*언해 있음	백두현(2009)
諭嶺南父老士民綸音	1794년(정조 18)	*금속활자본 (임진자)		*언해 없음	
綸音 (합본)	1794년(정조 18) 이후	*금속활자본 (임진자)	<p>*표제: 諭諸道道臣綸音</p> <p>*포함된 윤음: 諭諸道道臣綸音(1794), 諭華城城役董工諸臣綸音(1794), 全羅道康津海南長興靈巖興陽珍島等邑民人慰諭蠲恤綸音(1794), 諭嶺南父老士民綸音(1794), 諭湖西士夫民庶綸音(1794)</p>		
綸音 (합본)	1794년(정조 18) 이후	*금속활자본 (임진자)	<p>*표제: 諭中外大小臣庶綸音</p> <p>*포함된 윤음: 諭中外大小臣庶綸音(1782), 諭諸道道臣綸音(1794), 崇儒重道綸音(1783)</p>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綸音(합본)	1794년(정조 18) 이후	*금속활자본 (정유자), 목판본	*포함된 윤음: 元子定號陳賀日諭中外綸音(1790), 歲首勸農綸音(1791), 內寺奴貢釐弊綸音(1791), 御製諭楊州抱川父老民人等書(1792), 諭延安等邑民人綸音(1793), 諭庭請百官綸音(1793), 御製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1793), 齋居日綸音(1794), 諭諸道道臣綸音(1794), 全羅道康津海南長興興陽靈巖珍道等邑民人慰諭蠲恤綸音(1794), 諭華城城役董工諸臣綸音(1794), 諭嶺南父老土民綸音(1794), 諭湖西士夫民庶綸音(1794)		
綸音(합본)	1794년(정조 18) 이후	*금속활자본 (임진자)	*포함된 윤음: 御製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1781),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1782), 諭海西綸音(1782),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1782), 諭中外大小臣庶綸音(1782), 崇儒重道綸音(1783), 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1783),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1783),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1783), 諭京畿民人綸音(1783), 諭湖南民人等綸音(1783),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1783), 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土民綸音(1783), 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土民綸音(1783), 諭大小臣僚綸音(1784), 王世子冊禮後綸音(1784), 奠忠綸音(1784), 諭朝參日入庭百言綸音(1784), 全羅道康津海南長興興陽靈巖珍島等邑民人慰諭蠲恤綸音(1794), 諭華城城役董工諸臣綸音(1794), 諭嶺南父老土民綸音(1794), 諭湖西士夫民庶綸音(1794), 字恤典則(1783)		
綸音諺解	1797년(정조 21)	*목판본	*다른 표제: 룬음언해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	1797년(정조 21)	*拓本 *금속활자본	*다른 표제: 御製養老務農頒行綸音, 양로무봉반횡소호오륜횡실향음의식향약조례륜음, 鄉約條例綸音,	*언해 있음	백두현(2009)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綸音		(정유자)	<p>正祖御製鄉約條例綸音</p> <p>*규장각 소장본은 '拓本'으로, 한중연 소장본 중 K2-1863은 '拓印本'으로 파악</p> <p>*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본, 한중연본 소장본 중 K2-4743, 규장각 소장본 중奎 1962의 1,奎 2060,奎 2504,奎 3237은 금속활자본(정유자)</p> <p>*성균관대 존경각본 중 B11B-0007은 목판본으로 파악, B11B 20은 필사본</p> <p>*권말에 '嘉慶二年正月初一日{{奉教書}}臣{{성명}}百拜謹書[奉教書]'와 같이 수령한 지방관의 글이 있음</p> <p>*작성한 지방관의 명단: 咸安郡守 金海鎮管兵馬同僉節制使 沈厚之, 清道郡守 申大羽, 榮州郡守 魚錫齡, 安東府使 李集, 宜寧縣監 晉州鎮管兵馬節制都尉 洪樂綏, 遷日縣監 慶州鎮管兵馬節制都尉 鄭柱, 靈川縣監 大邱鎮管兵馬節制都尉 金守曾, 梁山郡守 東萊鎮管兵馬同僉節制使 尹魯東, 金近淳, 慶州府尹 慶州鎮兵馬節制使 俞漢誤, 晉州牧使 晉州鎮管兵馬僉節制使 南寅老, 鎮海縣監 金海鎮管兵馬節制都尉 李元圭, 醴泉郡守 安東鎮管兵馬同僉節制使 權偒, 星州牧使 穀用鎮兵馬節制使 趙榮慶, 金海都護府使 李身敬, 開慶縣監 宋倫儀, 南海縣令 成夢龍, 柴原縣監 金海鎮管兵馬節制都尉 朴命燮, 義興縣監 大邱鎮管兵馬節制都尉 李宗明, 河東都護府使 兼晋州鎮管河東兵馬同僉節制使 金允鍾, 東萊都護府使 東萊鎮管兵馬僉節制使 鄭尙愚, 柒谷都護府使 架山鎮兵馬節制使 尹養儉, 金山郡守 尚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 李廷書, 龍宮縣監 金獻祚, 仁同都護府使 崔獻重, 泗川縣監 晉州鎮管兵馬節制都尉</p>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p>權恩浩, 善山府使 尹文東, 河陽縣監 大邱鎮管兵馬節制都尉 趙永祥, 陝川郡守 黃運祚, 開寧縣監 尙州鎮管兵馬節制都尉 金喆淳, 長鬱縣監 慶州鎮管兵馬節制都尉 林淵浩, 高靈縣監 尚州鎮管兵馬節制都尉 李衆鼎, 真寶縣監 沈斗漢, 三嘉縣監 朴獻源, 義城縣令 安東鎮管兵馬節制都尉 鄭在中, 永川郡守 慶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 沈公著, 機張縣監 東萊鎮管兵馬節制都尉 鄭宅興, 大邱都護府判官 洪履簡, 慶山縣令 大邱鎮管兵馬節制都尉 金仁柱, 固城縣令 金海鎮管兵馬節制都尉 南履翼, 慈仁縣監 大邱鎮管兵馬節制都尉 姜彙鉉, 昌原大都護府使 金海鎮管兵馬僉節制使 趙宅鎮, 咸昌縣監 申光岳, 興海郡守 慶州鎮管同僉節制使 尹弘心, 丹城縣監 尹可基, 比安縣監 安東鎮管兵馬節制都尉 李周斌, 新寧縣監 大邱鎮管兵馬節制都慰 李龜錫, 咸陽郡守 宋煥章, 昆陽郡守 晉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 金晚淳, 豐基郡守 安東鎮管兵馬同僉節制使 李勉齊, 蔚山都護府使 慶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 李廷仁, 寧海都護府使 黃熙, 草溪郡守 俞彥銷, 軍威縣監 安東鎮管兵馬節制都尉 李義雲, 山清縣監 晉州鎮管兵馬節制都尉 柳誨, 安義縣監 晉州鎮管兵馬節制都尉 朴正圭, 順興都護府使 安東鎮管兵馬同僉節制使 李周顯, 密陽都護府使 大邱鎮管兵馬僉節制使, 尚州牧使 金在淳, 盈德縣令 安東鎮管兵馬節制都尉 李潞秀, 英陽縣監 安東鎮管兵馬節制都尉 徐潞修, 彥陽縣監 慶州鎮管兵馬節制都尉 李邦幹, 清河縣監 慶州鎮管兵馬節制都尉 鄭德濟, 知禮縣監 徐享修, 居昌縣令 晉州鎮管兵馬節制都尉 金鍊, 彥陽縣監 慶州鎮管兵馬節制都尉 李邦幹, 清河縣監 慶州鎮管兵馬節制都尉 鄭</p>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德濟, 知禮監臣 徐享修, 居昌縣令 晉州鎮管兵馬節制都尉 金鍊, 昌寧縣監 大邱鎮管兵馬節制都尉 李田秀, 禮安縣監臣洪樂教, 禮安縣監 洪樂教, 玄風縣監 張錫胤, 奉化縣監 蔡弘直, 巨濟都護府使 金海鎮管兵馬僉節制 梁烷, 青松都護府使 洪義浩		
綸音 (합본)	1797년(정조 21) 이후	*금속활자본(정유자), 목판본	*포함된 윤음: 義僧番錢減半給代事目(1785), 六道義僧番錢都數 禁紋事目(1787), 使行賚去事目(1787), 御製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1781), 諭諸道道臣綸音(1794), 諭華城役董工諸臣綸音(1794), 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綸音(1797)		
綸音 (합본)	1797년(정조 21) 이후	*미상	*포함된 윤음: 元子初度日諭六道綸音,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1783), 諭湖南民人等綸音(1783),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綸音(1797)		
綸音 (합본)	1798년(정조 22) 이후	*금속활자본 (정유자)	*포함된 윤음: 全羅道康津海南長興興陽靈巖珍道等邑民人慰諭蠲恤綸音(1794), 諭華城役董工諸臣綸音(1794) 외 5건		
綸音 (합본)	1798년(정조 22) 이후	*금속활자본 (임진자)	*포함된 윤음: 全羅道康津海南長興靈巖興陽珍島等邑民人慰諭蠲恤綸音(1794), 諭華城役董工諸臣綸音(1794), 諭嶺南父老土民綸音(1794), 諭湖西士夫民庶綸音(1794), 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綸音(1797), 御製勸農政求農書綸音(1798)	*언해 있음	
綸音 (합본)	1798년(정조 22) 이후	*금속활자본(정유자), 목판본	*포함된 윤음: 義僧番錢減半給代事目(1785), 禁紋事目(1787), 使行賚去事目(1787), 御製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1793), 全羅道康津海南長興興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陽靈巖珍道等邑民人慰諭蠲恤綸音(1794), 諭華城城役董工諸臣綸音(1794), 諭嶺南父老士民綸音(1794), 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鄉飲儀式鄉約條例綸音(1797), 御製勸農政求農吉綸音(1798)		
綸音諺解	정조 연간	목판본, 목활자본			
論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	1839년(현종 5)	*금속활자본(임진자 또는 정유자) *목판본	*다른 표제: 內賜斥邪綸音, 斥邪綸音 *규장각 소장본(南雲古 21), 日本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韓11-23은 금속활자본으로 교서관 간행으로 파악 *日本小倉文庫(東京大學) 중에서 L174820은 목판본 *고려대학교 도서관본 중 화산B9-A1A, 대학원 B9-A1A는 忠淸監營에서 간행한 목판본 *성균관대 존경각본 B11B 15는 1840년(현종 6) 전라감영에서 간행한 목판본, 刊記 : 庚子(1840) 春 完營新刊 *宣傳官, 直提學, 繕工奉事, 副司果, 護軍, 白川郡守, 典獄參奉, 副護軍, 東寧尉(金賢根), 河陽縣監, 永川郡守, 大護軍, 前司成, 등에게 내린 内賜記 있음	*언해 있음	백두현(2009)
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綸音	1881년(고종 18)	금속활자본(정유자 또는 임진자)	*다른 표제: 斥邪綸音, 御賜斥邪綸音, 어제유대쇼신료급증외민인동적샤륜음 *經理事, 武衛所從事官, 長陵參奉, 灵巖郡守, 蔚山府使, 確平縣監, 副護軍, 司饔直長, 鎮川縣監, 宗正卿, 檢校待敎, 平邱察訪 등에게 내린 内賜記 있음	*언해 있음	백두현(2009)
御製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綸音	1882년(고종 19)		*다른 표제: 어제유팔도사도기로인민등륜음	*언해 있음	박정규(1993) 백두현(2009)
綸音	1894년(고종 21)	필사본		*고종이 왕세자와 함께 종묘에 나아	

書名	刊行年度	板本事項	標題, 刊記 및 간행사항	비고	전거(참고문헌)
				가 誓告를 행한 뒤 중외 신민에게 내 린 윤음	
論音	1903년(광무 7)	필사본			
諭江原道大小民人等	1907년				박정규(1993)
諭京畿大小民人等	1907년				박정규(1993)
諭慶尙南道大小民人等	1907년				박정규(1993)
諭關北十鎮綸音	고종 연간	필사본	*다음 윤음 합본: 勸農綸音, 斥邪綸音, 送痘神文		